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on service-based and value-added
communications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2009. 11.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on service-based and value-added
communications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2009. 11. 30.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신현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개발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연구 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신현문(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요 약 문

1. 제목

-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부가통신 제도개선 방안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내 별정통신 분류체계, 사업자간 차등 규제 합리화, 회선설비 이용대가, 간접접속, 선불통화권 관련 이용자 보호 등 국내 별정통신 제도개선 방안 도출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국내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선설비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어진 상황
-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사업형태인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자보호 차원에서의 규제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
- 해외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는 도매제공, 간접접속 등을 통해 사업자간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안전장치를 통신법은 물론 별도의 선불통화카드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
- 별정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이용대가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불공정한 이용약관 보다 더 현실적인 산정방안을 마련
- 더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통신산업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 또한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는 물론 선불통화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 통신사업자 범위
 -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의 산정방법 및 갱신, 보험금 지급절차
 - 별정/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국내 별정통신 분류체계, 사업자간 차등 규제 합리화, 회선설비 이용대가, 간접접속, 선불통화권 관련 이용자 보호 등 국내 별정통신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별정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의 단계적 통합 방안
 -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 규제 차등 합리화 방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

4. 연구내용 및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연구는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도입에 따라 기존의 별정통신사업자 중 선불통화권 사업자에 한해서 중앙전파관리소에 발행 총액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제도에서, 그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로까지 확대되고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을 감안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와 가입금액 산출기준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재정적인 능력과 이용요금을 감안하여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면제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의 산정방법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적인 능력과 이용요금에 관한 해당 사업자의 위치를 정한 후 해당 구간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적정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함
 - 또한, 보증보험의 갱신 및 보험금 지급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고시하도록 함
- 별정/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에 있어서는 먼저 세부기준 마련에 필요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 과징금부과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세부기준 마련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산정에 있어 그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의 기업 운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과징금의 산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매출액의 정의를 EU 등의 사례를 모범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활용내용

-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후속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상반기 중에 추진되어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법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o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진되는 이용자보호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별정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이용에 대한 사업자간 상호정산은 정책으로 바로 입안되어야 할 사항임

6. 기대효과

- o 통신산업에서 선불통화제에 대한 이용자보호 측면의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관련 이용자수가 증가됨에 따라 통신시장 활성화 예상
- o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상호정산 기준을 이용하여 대가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책추진 및 규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o 도매대가 산정 기준 도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저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중소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대비 경쟁력 제고에 기여
- o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이용약관이 아닌 상호접속 등 기본적인 사업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이용대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별정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

SUMMARY

1. Title

- Improvement plan on service-based and value-added communications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 Research Objectives

- Revision of low-leve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mendments introduced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Strategies for overhauling the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domestic service-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greater rationality, including the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asymmetric regulatory measures; and rules related to the rates of line facilities, indirect access and consumer protection of prepaid calling cards.

B. Research Relevance

- Until recently, operators classified in Korea as service-bas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ccessed line facilities of common carriers against the payment of a fee agreed-upon under a facility use or access agreement with the latter. However,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re is no longer a set rule regulating the use or access of facilities by them or pricing thereof.
- There is also an urgent need for rules to protect telecom consumers regarding prepaid calling cards, which is the billing model most widely used by service-bas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 Outside Korea, wholesale access or indirect access schemes are in place for setting prices for use of network infrastructure owned by facility-based operators by operators of this type. Many countries also have a

safety mechanism in place to compensate consumers for any service disruption or failure to meet promised service levels. There are even laws aimed specifically at protecting prepaid telecom service consumers.

- By devising a more rational method of setting prices for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etwork access environment for service-based operators, currently often forced into unfair service agreements with facility-based operators.
- Fair inter-operator access arrangements, as they help create a fairer competition environment for service-based operators, will ultimately have the effect of stimulating the overall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an guarantee insurance program guaranteeing compensation of consumers of prepaid calling services in cases where they are unable to use the prepaid credit due to irregular practices on the part of card issuers or service providers protects telecommunications consumers as well as stimulates the prepaid calling marke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Suggestions on how to revise low-leve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Determination of types of telecom operators required to pay into a guarantee insurance plan for compensation of prepaid calling consumers and other general consumers.
 - Proposal of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uarantee insurance subscription fee, method of guarantee insurance policy renewal and claims procedures.
 - Proposal of rules and criteria related to assessment and imposition of fines on service-based/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 Designing strategies for overhaul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service-based operators, revising asymmetric regulatory measures for greater rationality and improving rules related to setting prices for

network facility access by service-based operators, indirect access arrangements and protection of prepaid calling consumers.

- Strategy for simpl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service-based operators through gradual consolidation of subcategories.
- Strategy for improving asymmetric regulatory measures currently in place in a manner to introduce a greater level of rationality.
- Strategy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unfair practices by service-based operators, related to prepaid calling cards.

4. Research Results

-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concerning the revision of low-level regulations so as to bring them in line with the recently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that the current rule, requiring only service-based operators providing prepaid calling services to enroll in the guarantee insurance program for the entire amount of prepaid credit in the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should be modified so that the insurance enrollment obligation is extended also to common carriers. The study also propos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inancial resources of individual operators and retail prices charged by them in the selection of types of operators that are required to enroll in the guarantee insurance program and determination of the amount insured.
- We propose that financial resources of individual operators and retail call prices charged by them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operators subject to the mandatory insurance enrollment requirement (or operators waived from the requirement).
- We propose to calculate the policy amount of each operator by determining their position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and retail call rates,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nd applying a weight corresponding to the section to which they belong.
- We also propose that the method of renewal of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and claims procedures be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rough a separate notice.

- Concerning the rules and criteria related to the assessment and imposition of fines on service-based/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rs, we review the current practice to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so as to provide pointers for the future rule-making and criteria-setting process.
- Currently, in Korea, the amount of a fine is assessed on the basis of 'total sales' of an operator. But, the notion of total sales, under the current rules, is very loosely defined and remains too general, which often results in saddling both service-based operators and common carriers with undue financial burden.
- Hence, 'total sales' as a base for calculating fines needs to be re-defined for greater clarity, by looking at related best practices in EU, for instanc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The revision of low-level regulations to bring them in line with the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needs to be done during the first half, as the proposed amendments are due for submission to the legislature in the second half.
- Hence, the results of at least of two of the tasks planned under this project, namely, the amendment proposal to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lating to th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ules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inter-carrier access, must be incorporated into rule-making immediately.

6. Expectations

- Concrete improvements in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protecting prepaid calling consumers, as this will lead to an increase in number of consumers of this service, are expected to stimulate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s a whole.
- A set of well-defined criteria for inter-carrier access settlement, allowing operators to quickly and easily set prices, is bound to contribute to the

timeliness and efficiency of policy undertakings and minimization of regulatory costs.

- Clear standards for setting wholesale access prices enable the telecom authority to proactively respond to resistance on the part of common carriers and can help boost small and medium-size operators' ability to viably compete against common carriers.
- Providing price-setting rules for service-based operators' access to common carriers' line facilities, instead of letting operators negotiate a price and service terms, eliminates problems arising from unequal negotiating positions, thus helping the former participate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more meaningfully and successfull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5
제 1 절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	7
1. 선불통화권의 정의	7
2.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유사제도 사례	8
가. 미국	8
나. 영국	10
다. 호주	11
3. 국내 보증보험제 관련 법률	14
가. 보증보험제도의 개요(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14
나. 보증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 주요 법률의 검토	17
4. 선불통화권 시행령 개정안	28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시행령 작성(안)	28
나. 법 제33조 제3항: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및 금액 관련	29
다. 법 제33조 제3항: 피보험자 관련	30
라.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 통신사업자의 범위	30
제 2 절 보증보험금의 산정방법, 갹신 및 지급절차	31
1. 기업 재무비율을 고려한 산정방식 개요	31
가. 검토배경	31
나. 기업 재무비율분석의 활용	31
다. 종합지수법 적용절차	33
라. 개별 재무비율의 유형	33
마. 선불통화권 보증보험금 산정기준 설정	34
2. 선불통화권 발행 보증보험금 산정기준(안)	38
가. 산정개요	38
나. 보험금 가입비용 산정 세부내용	40
다. 이용요금을 반영한 보험금 가입비용 산정	45
라. 보증보험금 가입금액 산정	45

3. 보증보험금의 갱신 및 지급절차	46
제 3 절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50
1.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 기준	50
가. 일본	50
나. EU	52
다. 영국	55
2.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부과기준	57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7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제46조 관련)	60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61
3. 별정/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향	63
 제 3 장 국내 별정통신 제도개선 방안	 67
 제 1 절 별정통신사업자 분류체계 통합방안	 69
1. 통신사업자 부류체계 및 서비스-별정통신을 중심으로	69
가.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69
나.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종류	71
2.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	75
가.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75
나. 설비기준 구분의 한계	77
다. 재정적인 진입장벽의 차이	78
3. 단계적 별정통신 호별 통합방안	79
가. 호별 통합의 필요성	79
나. 별정 1, 2호간 통합방안	80
다. 가상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 방안	81
 제 2 절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합리적인 차등규제 방안	 82
1. 규제환경 변화와 차등	82
가.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 변화	82
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접속 차등	84
다. 기간-별정간 이용료 정산(대가 산정)의 차등	90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97
2. 기간·별정간 차별적 요소에 대한 입장	97
가. 별정통신사업자	97
나. 기간통신사업자	100
3. 차등규제 합리화를 위한 고려사항	103
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접속 차등	103
나. 이용료 정산(대가 산정)의 차등	104
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105
4. 기간-별정에 적용되는 도매대가 방식	105
가. 상호접속 산정방식	106
나. 설비제공 대가 산정방식	109
다.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대가 산정방식	111
라. 도매회선임대 대가 산정방식	116
5. 기간-별정 차등규제 합리화 방안	122
제 3 절 선불통화권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	128
1. 민간운영기구 설립의 근거	128
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28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3항	129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5항	129
2. 선불통화권 발행심의(심사)위원회 관련 국내사례	131
가. 검토범위	131
나. 통상적인 법령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현황	131
다. 민간에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한 법률 사례	132
라.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나, 시행령에서 특정사안의 「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33
마. 인증업무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135
3. 선불통화권 운영기구 관련 해외사례	135
가. 일본	135
나. 호주	137
다. 캐나다	138
라. 스위스	139
마. 아일랜드	143
4.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운영방안	145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범위내 방안	145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기타 방안	146

다. 일반 또는 통신관련 소비자기구를 이용하는 방안	147
제 4 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3

Contents

Section 1	Introduction	1
Section 2	Revision of Low level Regulations to Bring Them in Line with the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5
Subsection 1	Operators Required to Enroll in Prepaid Calling Card Guarantee Insurance Plan	7
1.	Definition of prepaid calling service	7
2.	Examples of overseas programs similar to the prepaid calling card guarantee insurance plan	8
3.	Korean laws related to guarantee insurances	14
4.	Amendment bill to the Enforcement Decree on Prepaid Calling Services	28
Subsection 2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Guarantee Insurance Policy, Policy Renewal and Claims Procedures	31
1.	Overview of a calculation method taking into consideration companies' financial ratios	31
2.	Proposed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prepaid calling card guarantee insurance policy	38
3.	Policy renewal and claims procedures	46
Subsection 3	Criteria for Assessment and Imposition of Fines on Serviced-based Operators	50
1.	Fine criteria in use in major countries	50
2.	Fine criteria used in Korea	57
3.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criteria used for assessment and imposition of fines on service-based/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63
--	----

Section 3 Strategy for Improving Korean Regulations Governing Service-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67

Subsection 1 Proposed Method for Simplification of the Service-based Operator Classification System 69

1. Telecommunications operator classification system, service categories and service-based services 69
2. Issues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75
3. Strategy for consolidation of categories 79

Subsection 2 A Rational Asymmetric Regulatory Regime for Common Carriers and Service-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82

1.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and its effects on asymmetric regulation 82
2. Review of asymmetric regulatory measures applied to common carriers and service-based operators 97
3. Key considerations for rationalization of asymmetric regulatory regime 103
4. Wholesale access pricing scheme for common carriers and service-based operators 105
5. Strategy for greater rationality in asymmetric regulation of common carriers and service-based operators 122

Subsection 3 Prepaid Calling Service relate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128

1.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non-government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128
2. Precedents related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Prepaid Calling Card Issuance 131
3. Overseas examples related to organizations in charge of overseeing prepaid calling service-related affairs 135

4.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model for telecom consumer protection	145
Section 4 Conclusion	149
Reference	153

표 목 차

<표 2-1> 선불통화권 관련 각국의 규제기관 및 피해배상 규제	8
<표 2-2> 국내 보증보험제 규제 현황	14
<표 2-3> 지표별 주요 재무비율	34
<표 2-4> 재무비율 특성별 재무비율 선정	35
<표 2-5> 재무비율별 가중치 부여방법	35
<표 2-6> 가입비율 산식 적용구간	40
<표 3-1>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69
<표 3-2> 전기통신사업법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개정 전·후 비교	83
<표 3-3> 전기통신사업법내 상호접속의 대가 개정 전·후 비교	84
<표 3-4> 설비제공제도와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비교	84
<표 3-5> 인터넷전화 접속료	93
<표 3-6> 이동망 발신 번호이동호의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료 배분	95
<표 3-7> 연동대가 및 대행수수료 비교표	96
<표 3-8> 선불통화권 사업자별 원가계산 방식	97
<표 3-9> 접속료 산정방식의 변화	107
<표 3-10> 일반전화망,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현황	108
<표 3-11> 인터넷전화 접속료 산정 현황	108
<표 3-12> 설비제공제도 내용 및 대가산정 기준	109
<표 3-13> 제공설비별 이용대가 현황	111
<표 3-14>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내용 및 대가산정 기준	113
<표 3-15> 활용 가입자선로별 이용대가 현황	114
<표 3-16> Ofcom의 LLU 및 WRL 가격상한 및 지수 설정	115
<표 3-17> WLR 요금약관('08.1.1~'09.7.31)	122
<표 3-18>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사례 검토	131
<표 3-19> 게임산업진흥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133

그 립 목 차

[그림 2-1] 종합지수법 적용 절차	33
[그림 2-2] 개별 재무비율의 유형	33
[그림 2-3] 재무비율별 분포도	36
[그림 2-4] 재무비율별 평점산정 구간	37
[그림 2-5] 보증보험금 산정방식 선정 절차	39
[그림 2-6] 선형 가입비율 산출방식	41
[그림 2-7] 비선형 가입비율 산출방식	42
[그림 2-8] Q-circle 가입비율 산출방식	43
[그림 2-9] 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43
[그림 2-10] 비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44
[그림 2-11] Q-circle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45
[그림 3-1] 교환기를 이용한 080 선불서비스	71
[그림 3-2] 일반 식별번호 후불 국제전화	72
[그림 3-3] 인터넷폰	73
[그림 3-4]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와 Gate Keeper 이용)	74
[그림 3-5]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 이용)	74
[그림 3-6] 무선재판매 서비스	75
[그림 3-7] 별정 인터넷전화 발·착신호의 흐름 및 대가	92
[그림 3-8] 동선일괄제공	112
[그림 3-9]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	112
[그림 3-10]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제공	113
[그림 3-11] 도매회선임대	117

제 1 장 서론

제 1 장 서 론

‘97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 음성재판매업 개방에 대비함과 동시에 국내 통신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 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97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98년 최초로 별정통신사업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별정통신사업 제도는 국내 통신시장에 통신요금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별정통신사업자 분류체계제도, 별정사업자의 불·편법 행위 및 이용자보호, 기간/별정간 불공정경쟁 등의 현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정통신사업 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 세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별정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별정 1호와 별정 2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IP장비의 진화로 인해 교환기능이 있는 장비를 별정 2호가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규 사업자들은 별정 1호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별정 2호 등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1호와 별정 2호를 교환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진입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별정제도 도입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요금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부 별정사업자의 경우 원링스왑이나 과금조작 등 불·편법 행위를 통해 통신시장을 교란시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제의 도입에 따라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운영기구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 사업자 분류제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별정간
권리·의무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별정사업자를 사업자 지위가 아닌 이용자 지위
로 상호접속 또는 의무설비제공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음으로써 요금경쟁
력 약화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유사한 경쟁역무에 대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별정통신 제도 개선과 이용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향후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진화에 있어 별정통신 제도 정비는 3개 역무통합에 대
비한 事前적인 차원의 제도개선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용자 편익에 치우치다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이용자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저렴
한 통신요금으로 별정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는 점과 기존의 피상적인 연구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
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선불통화권을 포함한 별정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부가
통신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보호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별정통신 호별
통합을 시점으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보다 폭넓은 역무통합에 대한 연
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제 2 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제 1 절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

1. 선불통화권의 정의

☐ 미국

- “선불전화통화카드(prepaid telephone calling card)”란 어떠한 이용자가 선불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번호(access number)와 인증코드(authorization code)를 미리 구매한 사용 권한¹⁾
- “선불전화카드(Prepaid Phone Cards)”는 특정 요금로 통화시간에 대한 카드의 금전적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카드²⁾

☐ 영국

- “선불통화카드(pre-paid calling cards)”란 고객이 유선이나 이동단말로 접속번호(access number) 다이얼을 돌리고 카드 뒷면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눌러 국내·외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³⁾

☐ 호주

- 선불통화카드(Pre-paid calling cards) 최초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재충전도 가능한 것⁴⁾
 - 사업자에 따라 매일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한도가 정해질 수 있음
 - Telecommunications Act 상에는 pre-payment로 정의

1) Prepaid Calling Car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8.

2) FTC v. Trans-Asian Comm'cns, Inc., 97-CIV-5764 (S.D.N.Y.)

3) Notification of Contravention of General Condition 10 under Section 94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4) phone cards fact sheets, ACMA.(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1741)

□ 한국

- 선불통화권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역무 제공 이전에 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⁵⁾

2.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유사 제도 사례

<표 2-1> 선불통화권 관련 각국의 규제기관 및 피해배상 규제

국가	규제기관	이용자 피해배상 규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선불통화권 발행 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용 금전채무증서(performance bond) ⁶⁾ 발행
영국	통신청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벌칙금 등 사후적 배상
호주	호주 통신 미디어 국 (A C M 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제3차 보증체계, 보험체계, 신용계좌 보유체계 중 사업자의 취사선택 규정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국 (IDA: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미결제 금액에 대한 사후적 배상

가. 미국

□ 관련 법률

- Section 13(b)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 15 U.S.C § 53(b)
-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 15 U.S.C § 45
- New York: Executive Law Section 63(12) and General Business Law ("GBL") Article 22-A

□ 규제 기관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국가적인 이용자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6) 재정 손실에서 계약자가 계약 이행 보증용 금전 채무 증서의 기간과 일치하여 계약을 실행하지 못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증서

보호기관으로서 선불통화제 관련 사기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일으키는 해당 규제기관 (Under Section 5 of the FTC Act)

- 2007년 FTC는 주일반검찰청(State Attorneys General), 기타 주기관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와 함께 연방-주연합 테스크포스 구성
- FTC는 기존의 경제관련 많은 정부기관을 축소 재편했는데, FTC의 면제에서 벗어났더라도 FCC 사법권 관할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

☐ 이용자보호 방안

- 계약이행보증용 금전채무증서(performance bond)⁷⁾를 선불통화사업자들이 선불상품을 광고나 판매하기 전에 발행하도록 요구

☐ 규제 현황

- FTC와 뉴욕검찰총장(NYAG: Office of New York Attorney General)은 선불통화카드와 관련하여 통화연결과 관리비용에 대해 분명히 공개하지 않음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분당요금을 부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선불통화카드를 사기적으로 마케팅한 회사(Tran-Asian Communications, Inc., Raj Telekom, Inc., Trans American Syatems, Inc., Rajesh Kalra 등)를 상대로 뉴욕지법(U. 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소송제기
- 뉴욕지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피고가 다시 선불카드를 광고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Kalra”에 최고 \$1,000,000의 계약이행보증용 금전채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행할 것을 명령⁸⁾

7) “Federal Certificate of Authority As Acceptable Surety On Federal Bond and Reinsuring”을 갖은 보증회사(surety company)가 발행한 재정적 손실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의 일종

8) FTC v. Trans-Asian Comm’cns, Inc., 97-CIV-5764 (S.D.N.Y.) (Stip. Final Order filed Mar. 17, 1998) (order requiring \$1 million performance bond before defendants can advertise or sell prepaid calling cards and barring future material misrepresentations about prepaid calling

- 명령이행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선불통화카드 판매는 물론 광고, 마케팅 등 어떠한 직·간접적인 사업 모두 금지
- 발행하는 금전채무증서는 선불전화카드사업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상의 유형자산(material asset)과 기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함
- 배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기금은 국고(United States Treasury)와 함께 "New York State"에 공탁됨
- 또한, 위원회와 NYAG는 이용자 보상을 위해 특정 대행기관(채권 또는 보증회사)⁹⁾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

나. 영국

□ 관련 법률

- “Communications Act Section 45”에 의거, 통신청(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은 전화카드회사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많은 일반조건을 발표
 - 일반조건 10에서는 요금부과에 대한 상세한 날짜와 웹사이트에 발표된 약관을 요구
 - 일반조건 11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
 - “Enterprise Act 2002 Part 8”은 “Control of Misleading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88”과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을 포함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Ofcom에 부여

□ 규제 기관

- “Communications Act 2003”과 “Enterprise Act 2002”에 의해 Ofcom이 선불통화카드 사업자를 조사할 권한을 갖음

cards).

9) 뉴욕주의 보험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Insurance)에서 면허를 받은 채권 및 보증회사

- Ofcom은 통화카드사업가 다음과 관련된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
 - 사용가능한 주어진 통화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여부
 - 부과된 요금이 실질적으로 매겨졌는지 여부
 - 신용(credit)을 모두 쓰기도 전에 카드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보호 방안

- 사후적인 적극개입 방식의 소비자 권익보호
 - Ofcom이 보상의 판정을 내리거나, 비용이나 경비의 변제를 감독하도록 하는,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실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 (Communications Act의 Section 45-55,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정)

□ 규제동향

- Cheers International Telecom Limited("Cheers")의 광고, 요금정보, 약관 관련 이용자 불만(2004년)
 - Ofcom은 Cheers가 일반조건 10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Communications Act Section 94(3)에 의거 2005년 3월 11일까지 일반조건 10에 따를 것을 명령
 - 그 때까지 따르지 않으면, Ofcom은 Communications Act Section 95에 의거 강제통지서를 발행하고(거나) Communications Act Section 96에 의거 (Ofcom에 지불되도록) 벌칙금을 부과

다. 호주

□ 관련 법률

- 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
 - Part 7(Protection for residential customers against failure by carriage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standard carriage services)

□ 규제 기관

- 호주통신미디어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은 별정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지불금액이 보호되는지 결정
- 보호체계는 ACMA 또는 이용자의 신청으로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의해 강제집행

□ 이용자보호 방안

- ACMA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계(scheme)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이용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보호요금지불(protected payment)을 지불하는 경우
 - ※ 보호요금지불은 pre-payment를 포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표준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제3자 보증체계

140. Protection schemes for protected payments—third party guarantee
(1) The ACMA may, by written instrument, formulate a scheme that:
(a) makes a carriage service provider that is bound by the scheme liable, in the event that:
(i) a residential customer of the provider makes a protected payment to the provider; and
(ii) at any time during the minimum service period ¹⁰⁾ for that payment, the provider fails to supply standard carriage services to the customer;
to reimburse the payment on a pro-rata basis in proportion to that part or parts of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vider fails to supply the services to the customer; and
(b) requires the provider to obtain a guarantee from a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provider's discharge of that liability.
(2) An instrument under subsection (1) is a disallowable instru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6A of the <i>Acts Interpretation Act 1901</i> .

10) The minimum service period for a protected payment: (a) must begin when the payment is

- 호주통신미디어국은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 3자로부터 보증을 획득할 것을 요구

○ 보험체계

141. Protection schemes for protected payments—insurance cover (1) The ACMA may, by written instrument, formulate a scheme that: ----- 생 략 ----- (b) requires the provider to take out and maintain an insurance policy to indemnify residential customers against a total or partial failure to discharge that liability. (2) An instrument under subsection (1) is a disallowable instru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6A of the <i>Acts Interpretation Act 1901</i>.

- 호주통신미디어국은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할 보험정책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

○ 신용계좌보유 체계

141. Protection schemes for protected payments—holding of payments in trust accounts (1) The ACMA may, by written instrument, formulate a scheme that: ----- 생 략 ----- (b) requires the provider to hold protected payments it receives in trust accounts; and (c) prohibits the provider from transferring any or all of the money in such an account to its beneficial ownership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draw down rules set out in the scheme. (2) An instrument under subsection (1) is a disallowable instru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6A of the <i>Acts Interpretation Act 1901</i>.

- 호주통신미디어국은 신용계좌로 수령하는 보호요금지불을 보유할 것을 요구
- 단, 사업자는 신용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금지

made; and (b) must not run for longer than 2 years.

3. 국내 보증보험제 관련 법률

<표 2-2> 국내 보증보험제 규제 현황

법률	관련 조항	이용자 피해배상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2항 10호 - 제24조 제1항	- 대통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장치로 보증보험, 공제 및 공탁의무 부과
전자금융거래법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 - 영 제15조 제6항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 - 등록면제조건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로 정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 제30조 제3항 - 영 제2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장치로 보증보험, 공제 및 공탁의무 부과 -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 및 보장금액의 최소한도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52조의7 제2항 - 영 제33조의18 제2항	-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금액
지적법	- 법 제45조의3 제2항 - 영 제57조의2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금액

가. 보증보험제도의 개요(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 서울보증보험의 기업 경제활동 관련 보증보험의 유형¹¹⁾

11) http://www.sgic.co.kr/product/pro_02_02.jsp

-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보증보험의 경우, 이행, 공사이행, 사업자주택, 할부판매, 부품성능, 성능, 품질, 송환, 납세, 분양, 인허가, 설계·감리, 리스, 공공임대주택, 시공 및 ABS 등이 있음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전자상거래(쇼핑몰), 전자상거래(결제수단), e-구매대금 및 e-Biz가 있음

□ 선불제 관련 유사 상품 (사례)

-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 적용 범위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인 보험계약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화 등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환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매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
 - 선불식 통신판매, 즉 소비자가 인터넷상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증보험으로 보상
 - 목적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는 보증보험 등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증보험 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쇼핑몰 개설 업체
 - 피보험자 : 당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 보험기간 및 가입 금액 :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상품 결제대금액을 한도로 보장
 - 보상유형

상품 미배송	상품대금 결제 후 상품 미수령 등의 피해
환불/반품거부	상품수령 후 쇼핑몰에서 환불 및 반품 거부 시
쇼핑몰 부도	쇼핑몰 부도로 인한 상품 미배송 등의 피해

- 소비자의 권리

- 가입내용 확인 : 소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가입내용(증권번호, 보험계약내용)을 고지 받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증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 지급

- 보증보험 가입절차

가입대상	쇼핑몰 개설업체
가입방법	쇼핑몰 개설업체가 소정의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청약을 하면 심사 및 가입조건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한도거래약정 체결)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등기부 등본, 통신판매업신고증,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 보증보험 한도액거래 신청서 및 약정서(당사 양식), 실명확인 서류

○ 전자상거래(결제수단)보증보험

- 적용 범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9조에서 정한 결제수단발행자가 결제수단이용약관에서 정한 대금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제수단 구매자 또는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전자결제수단(전자화폐, 전자상품권, 선불카드, 가상적립점수 등)¹²⁾발행자

12) 동 상품의 약관에서는 전자결제수단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수단 중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구입·이용하기 위해서 재화 등의 거래에 앞서 구입·이용에 대한

- 피보험자 : 전자결제수단 구매자 또는 권리자
- 보험가입 금액 및 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계약자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결제수단 구매대금 환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당좌거래정지 등으로 환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공고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채권액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보험금을 지급

나. 보증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 주요 법률의 검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5항)
 - 특히 동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시행령 제28조)
 - 재화 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시행령 제28조 제3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시행규칙 제12조)
 - 구매자가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호)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 및 가상적립점수(마일리지, 포인트, 인센티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화폐 대용의 가치를 지닌 것)라 정의하고 있음.

-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규칙 제2항 1호) →지체 없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1월 단위로 조정
- 보험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직접 수령, 다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최종 소비자(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호)
-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발행자는 30일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두어 채권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채권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신고액이 보험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례균분하여 보상(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법 제13조)

- 동법 제13조 제2항 10호에서는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 제1항13)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법 제24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수의 사이버몰(3개 이상)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법 제8조 제4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

13)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중략---,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중략---,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및④ 생략

계약 등을 체결의무가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법 제24조 제1항 각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동법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② 및 ③ 생략 ④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② 본문 및 1호 내지 9호 생략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제7조의 전자적 대금지급에 이용되는 결제수단 중 3개 이상의 사이버몰(하나의 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을 말한다.

③ 및⑤ 생략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① 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및④ 생략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⑩ 생략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동법 제30조)
-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 중의 고의·과실 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

의 거래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장치로 보증보험, 공제 및 공탁의무 부과 (동법 제30조 제3항)

- 상기 제3항의 사본교부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교부의무

○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 및 보장금액의 최소한도(동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 : 2억원 이상(분사무소 추가 시, 각 1억원 이상 추가)

- 개인 : 1억원 이상

- 특별법에 의한 예외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설정

○ 보증보험, 공제 및 공탁의 재가입 또는 추가

- 보증의 변경 : 기존의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한 후 신고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보증기간의 만료 :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동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가입 내지 보전(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

·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②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	---

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동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제1항)

-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제2항)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당해 업무를 행할 수 있음(제3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중 통신서비스 선불제와 유사한 경우로는 동법 제28조 제3항 1호 나목 및 다목이 있음

-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제3항 1호 나목)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 임(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제3항 1호 다목)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 및 ② 생략 ③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④ 생략 ⑤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생략, ④ 및 ⑤ 생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⑦ 및 ⑧ 생략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사의 손해배상 책임(동법 제52조의7)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제2항)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금액(동법 시행령 제33조의18 제2항)
 - 법인 : 2천만원 * 지도사의 수
 - 개인 : 2천만원 이상
- 보증보험 및 공제에의 재가입(동법 시행령 제33조의18 제3항)
 - 지도사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제33조의18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 ①법 제5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적법상 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45조의3)

-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1항)
-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제2항)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금액(영 제57조의2)

- 공사 : 10억원 이상
- 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 보증보험의 변경(동법 시행령 제57조의3)

-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 보증보험에의 재가입

- 보험기간의 만료에 의한 경우 :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영 제57조의3 제2항)
-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금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경우 :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함(영 제57조의4 제2항)

○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 ①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측량업자 : 1억원이상 2. 공사 : 10억원이상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①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①생략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 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선불통화권 시행령 개정안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시행령 작성(안)

- 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선불통화권발행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검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재가입,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사업법(개정안)	시행령(안)
제33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에 따른다.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① 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선불통화권발행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검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사업자 또는 제4항 각호의 전부면제사업자라 할지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선불통화권 발행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전부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④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면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제1항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선불통화권의 요금잔액확인 등 이용방법,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 시 연락처, 보험가입 사실, 그 밖의 제한 사항 및 이의 고지 방법과 이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2.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선불통화권 발행액이 10분의1 이하인 사업자 ⑥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재가입,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나. 법 제33조 제3항: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및 금액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동 법”)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실제 “산정금액”까지 위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산정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증보험료 “산정기준” 및 “가입금액”에 관하여
 - 법 제33조 제3항에서의 위임사항은 보증보험에의 가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과 그 산정기준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의무의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해석됨

-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자가 발행하고자 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대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에 맞게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법 제3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선불통화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33조 제3항의 해석

-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 모두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판단하기 위한 “산정기준”
 - 산정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특징”을 위한 제반 절차
 - 보증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판단 기준

다. 법 제33조 제3항: 피보험자 관련

- 동 법은 피보험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피보험자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보험자는 동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 통신사업자의 범위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시한 재정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선불통화권 발행액이 10분의1 이하인 사업자

제 2 절 보증보험금의 산정방법, 갱신 및 지급절차

1. 기업 재무비율을 고려한 산정방식 개요

가. 검토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33조 신설 항목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 선불통화권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금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재무비율분석의 활용성 검토

나. 기업 재무비율분석의 활용

- 기업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기업경영분석의 활용
 -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자, 정부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업경영분석을 활용
 - 초기에는 금융회사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집분석
 - 오늘날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경영자, 투자자의 의사결정 또는 정부의 통화신용 및 산업정책 수립,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등 이용범위 확대
- 전통적으로 기업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중심으로 진행
 -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회계자료
 - 다만, 재무비율분석은 계량화의 한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분석이 필요
 - 기업경영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에 관한 모든 경영상태를 고려하여야 하

나, 재무비율만을 활용한 경우 비계량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 재무비율은 기업의 과거자료를 이용하므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에는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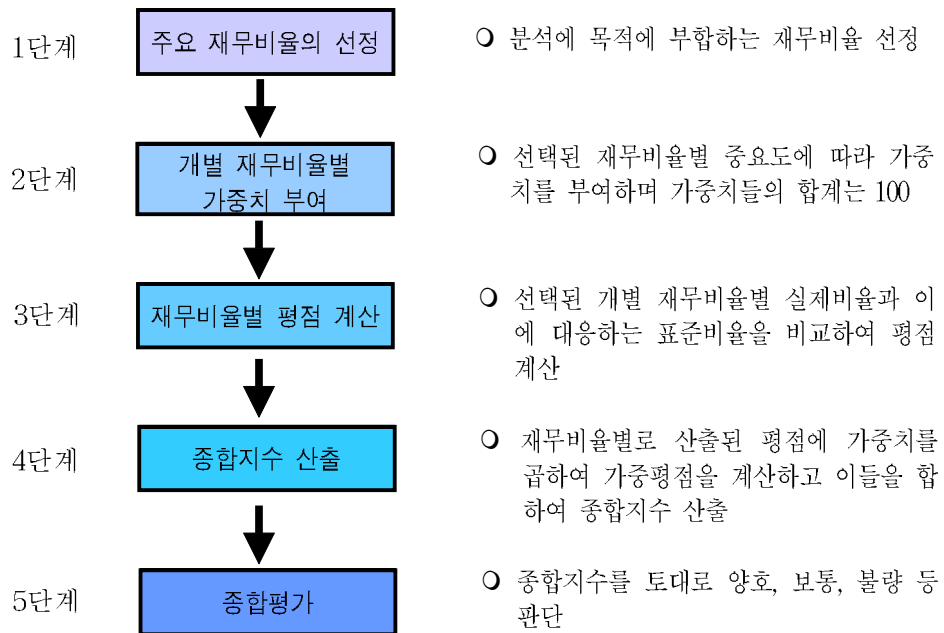
□ 종합지수법 활용

- 개별적인 재무비율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석목적에 부합한 개별 재무비율들을 선정한 후, 각각의 비율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지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해 종합적 판단 실시

□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선불통화권 보증보험금 산정

- 보증보험금 규모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제공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지속성 여부 판단이 중요
- 기업의 사업지속성 여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여부와 관련이 되며 재무건전성은 재무비율을 통하여 판단 가능함
- 따라서 재무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불통화권 보증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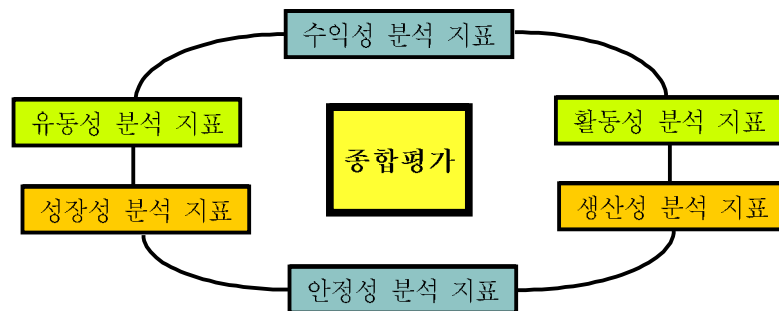
다. 종합지수법 적용절차



[그림 2-1] 종합지수법 적용 절차

라. 개별 재무비율의 유형

□ 기본구성



[그림 2-2] 개별 재무비율의 유형

□ 지표별 재무비율 요약

<표 2-3> 지표별 주요 재무비율

구분	수익성지표	유동성지표	안정성지표	활동성지표	성장성지표	생산성지표
의의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측정	단기채무 지급능력 파악	적정성장과 수익을 실현 및 장기채무상환능력 판단	자본 또는 투하된 자산 운용의 효율성 파악	경영규모/기업활동성과 변화정도 파악	부가가치 생산성 측정
주요 재무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유동부채) ○순운전자본 대비 총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본)	○부채비율((유동부채 + 고정부채)/자기자본) ○유동(고정)부채비율(유동(고정)부채/자기자본)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차입금의 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	○총자산(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산(자기자본)) ○경영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건설중자산-투자자산)) ○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고정자산) ○매출채권(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매입채무))	○총자산(유동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증가율((당기말 총자산(유동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 - 전기말 총자산(유동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전기말 총자산)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 ○노동장비율((유형자산-건설중자산)/종업원수) ○자본집약도(총자본/종업원수)
기타	(유동성분석/ 현금흐름분석)보완 필요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과 현금흐름 분석 보완 필요	수익성분석과 장기부채 추가조달 능력 동시 고려 필요	다른 평가지표와 상관관계 고려 필요	현금흐름분석을 포함한 유동성분석과 수익성분석 보완 필요	수익성 분석에 의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필요

마. 선불통화권 보증보험금 산정기준 설정

□ 보증보험금 산정을 위한 재무건전성 특성

- 보증보험금 설정 목적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이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여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단기적 사업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이 중요함
 - 단기적 사업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 특성으로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별정 1호 사업자와 같이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중장기적 사업지속성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도 추가적으로 고려함

□ 주요 재무비율의 선정

- 상기의 재무건전성 특성을 반영하고 적용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한편, 종합지수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Wall 지수법의 주요 재무비율을 감안하여 지표특성별 재무비율의 수를 2~3개로 선정함
- 선정된 재무비율

<표 2-4> 재무비율 특성별 재무비율 선정

재무비율 특성	주요 재무비율 선정
안정성	부채비율, 고정비율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성	유동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또는 현금비율), 순운전자본 대비 총자본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비율별 가중치 부여방법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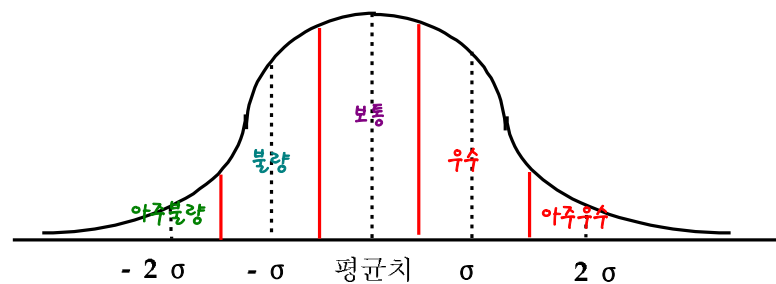
<표 2-5> 재무비율별 가중치 부여방법

재무비율	(1 안) 동일가중치 적용	Wall 지수법	Altman 부실기업판별식	(2 안) 차별가중치 선정
부채비율	10	25	0.420	25
고정비율	10	15		5
총자산순이익률	10	-	3.107	10
매출액영업이익률	10	-		10
유동비율	10	25		15
영업현금흐름비율	10	-		5
순운전자본 대비 총자본	10	-	0.717	5
총자산회전율	10	35	0.998	15
매출증가율	10	-		5
총자산증가율	10	-		5
합 계	100	100	-	100

- 가중치 부여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산업특성, 기업규모, 기업수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여기서는 재무비율별 동일 가중치 적용방법, 기존연구결과를 활용한 적용방법을 비교하여 선정함

□ 재무비율별 평점 산정

- 평점은 재무비율별 실제치와 표준치간 비교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비율별 절대값을 활용하는 방법과 특성(산업, 규모)별 재무비율별 분포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이중 절대값을 활용하는 방법은 비교대상의 표준치 산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분포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 분포도를 활용하는 경우 각 재무비율별 분포도를 이용하여 10등분한 후, 점수부여(0점~10점)를 통해 구체적인 평점 산정
- 합리적인 분포도(평균과 표준편차)는 실제 별정사업자들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샘플조사에 의해 재무비율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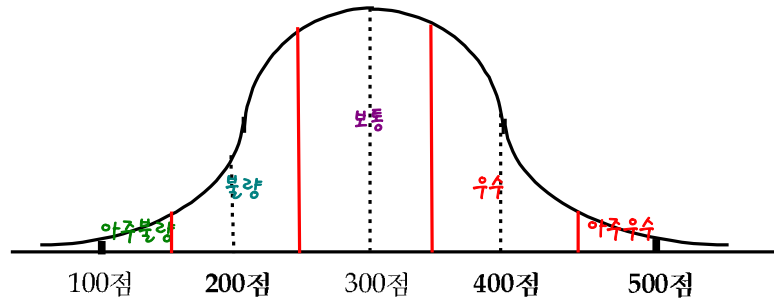


[그림 2-3] 재무비율별 분포도

□ 재무비율별 평점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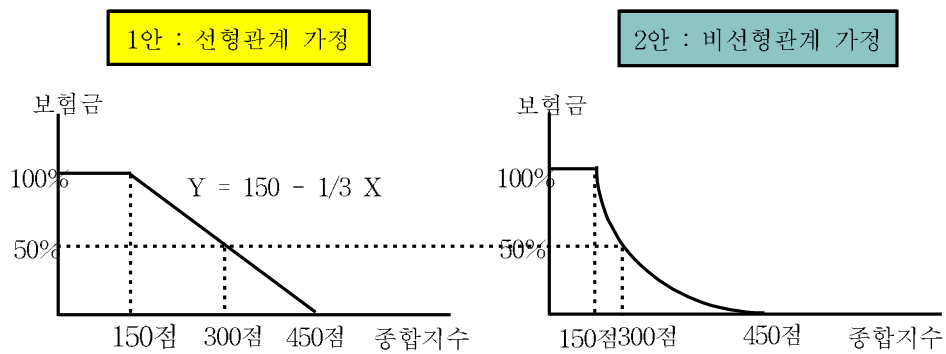
- 각 재무비율별 평점과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종합지수값으로 함

$$\text{기업별 종합지수값} = \sum (\text{평점비율} \times \text{가중치})_i \quad i: \text{재무비율}$$
- 종합지수값의 분포 : 100점(최저) ~ 300점(평균) ~ 500(최고)



[그림 2-4] 채무비율별 평점산정 구간

○ 보증보험금 비율 산정방법의 예



< 예 시 >

- . 450점 이상 : 면제
- . 350점 : 발행가액의 33%
- . 300점 : 발행가액의 50%
- . 250점 : 발행가액의 67%
- . 200점 : 발행가액의 83%
- . 150점 이하 : 발행가액의 100%

< 예 시 >

- . 450점 이상 : 면제
- . 350점 : 발행가액의 20%
- . 300점 : 발행가액의 50%
- . 250점 : 발행가액의 70%
- . 200점 : 발행가액의 90%
- . 150점 이하 : 발행가액의 100%

2. 선불통화권 발행 보증보험금 산정기준(안)

가. 산정개요

□ 보험금 산정 원칙

○ 기본 원칙

- 사업법에 명시된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의 개발
- “재정적 능력”이 낮을수록 보험금이 발행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높을수록 보험가입비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 “재정적 능력” 이상을 갖는 사업자는 면제되는 구조로 보험가입 비율을 설계

○ 보증보험 산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업자

- 자기자본 잠식상태의 사업자 (* 고시에서 “부채비율”과 “고정비율”이 마이너스인 사업자로 지정 예정)는 선불발행총액 대비 보험금 가입비율을 100%로 함
- 회계연도 2년 이하인 사업자의 선불발행총액 대비 보험금 가입비율을 100%로 함
- 기타 고시에서 지정하는 예외사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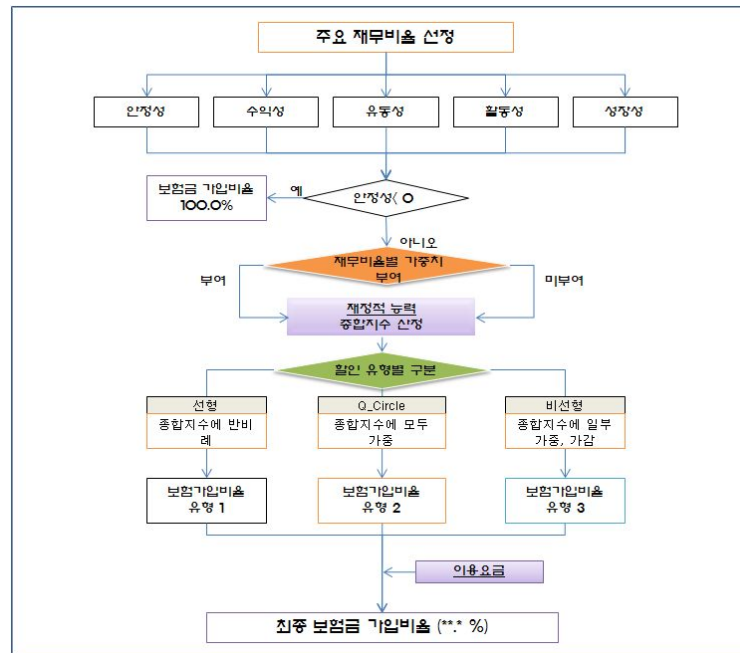
□ 보험금 가입비율 산출 프레임

○ 제도의 취지에 부합 여부

-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발행총액 대비 보험금 가입비율 산정프레임을 선별하는 방식을 하위법령에 반영토록 함

○ 최적 프레임 도출 절차

- “재정적 능력” 측면에서 사업자별로 지표별 점수를 합산 후, 대표적인 3가지 방안별로 발행 총액대비 보험금 가입비율을 산출하고, “이용요금”측면을 최종 반영하여 정책 방향에 최대 부합하는 안을 선정



[그림 2-5] 보증보험금 산정방식 선정 절차

□ 재정적 능력 산정을 위해 선정된 재무비율

○ 안정성 대표 재무비율

- 부채비율 = $(\text{유동부채} + \text{고정부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고정비율 = $\text{고정자산}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수익성 대표 재무비율

- 매출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text{법인세차감전})\text{순이익} / \text{총자산} \times 100$

○ 유동성 대표 재무비율

- 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 영업현금흐름비율 = $\text{영업현금흐름} / \text{유동부채} \times 100$
- 순운전자본 대비 총자본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 \text{총자본} \times 100$

○ 활동성 대표 재무비율

- 총자산(자기자본)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총자산(자기자본)}$

○ 성장성 대표 재무비율

- 매출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 100

나. 보험금 가입비율 산정 세부내용

□ 재무비율별 구간 및 지수화

○ 재무비율별 점수 기준

- 각 재무비율별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만 포함되도록 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데이터를 정비
- ※ 참고: 정규분포는 전면적의 약 68.26%는 평균치로부터 $\pm 1\sigma$ 의 거리내에 있고, 약 95.45%는 $\pm 2\sigma$ 의 거리내에, 99.73%(거의 전부)는 $\pm 3\sigma$ 의 거리내에 존재
- 따라서, 99.73%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각 항목별 전체 데이터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의 삭제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줄여나감
- 삭제 과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현 데이터의 평균치와 이를 기준으로 표준편차(σ) 단위로 여덟 등분하여 구간을 획정
- 각 구간별로 1~8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800점(선정된 재무비율이 10개인 경우)을 만점으로 함. 단,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재무비율에 대해서는 “(8-1)/나누는구간수” 간격의 점수를 부여하여 지수화 함

□ 보험금 가입비율 산정

○ 가입비율 산식 적용구간 산정

- 가입비율 산식 적용 종합지수 구간 설정 (가중치 미적용)
- 가입비율 산식 적용 종합지수 구간 설정 (가중치 적용)

<표 2-6> 가입비율 산식 적용구간

보험금 가입비율 100% 구간	보험금 가입비율 산식적용 구간	보험금 가입비율 면제 구간
~ (평균-3 σ)	(평균-3 σ) ~ (평균+3 σ)	(평균+3 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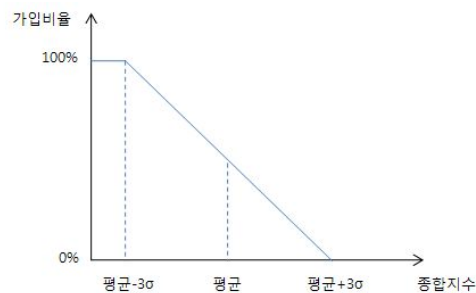
□ 가입비율 산출 산식

○ 선형 방식

- 종합지수에 반비례하여 가입비율을 산정하는 방식
- 종합지수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음(-)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100% 적용하고, 양(+)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0% 적용하는 방식

$$\text{가입비율} = 1 - \frac{\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 (\text{평균} - 3\sigma)}{(\text{평균} + 3\sigma) - (\text{평균} - 3\sigma)},$$

단, $(\text{평균} - 3\sigma) \leq \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leq (\text{평균} + 3\sigma)$



[그림 2-6] 선형 가입비율 산출방식

○ 비선형 방식

- 종합지수에 반비례하게 가입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종합지수가 평균값 보다 높은 낮은 기업은 선형방식에 의한 가입비율 보다 높게 가입비율을 책정하고, 반대로 종합지수가 평균값 보다 낮은 기업은 선형방식에 의한 가입비율 보다 낮게 가입비율을 책정하는 방식
- 종합지수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음(-)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100% 적용하고, 양(+)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0%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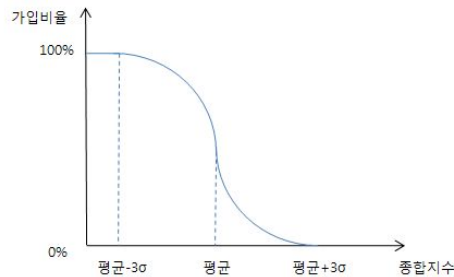
용하는 방식(선형방식과 동일)

- 종합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재정적 능력이 양호, 불량을 판단하여 양호한 기업은 가감하고 불량한 기업은 가중하는 방식

$$\text{가입비율} = 1 / (1 + \text{EXP}(-13.33 \times (0.5 - \left\{ \frac{\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 (\text{평균} - 3\sigma)}{(\text{평균} + 3\sigma) - (\text{평균} - 3\sigma)} \right\}))),$$

단, $(\text{평균} - 3\sigma) \leq \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leq (\text{평균} + 3\sigma)$

※ 13.33은 0.13%만이 전액면제 또는 전액 가입되도록 조정한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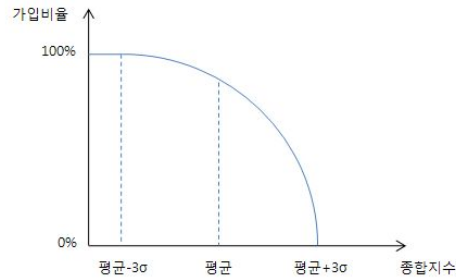
[그림 2-7] 비선형 가입비율 산출방식

○ Q-circle 방식

- 종합지수에 가중 반비례하게 가입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선형방식에 의한 가입비율 보다 높게 가입비율을 책정하는 방식
- 종합지수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음(-)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100% 적용하고, 양(+)으로 멀어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 비율을 0% 적용하는 방식(선형방식과 동일)
- 모든 기업에 가입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보증보험제도의 도입 초기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

$$\text{가입비율} = \sqrt{1 - \left\{ \frac{\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 (\text{평균} - 3\sigma)}{(\text{평균} + 3\sigma) - (\text{평균} - 3\sigma)} \right\}^2},$$

단, $(\text{평균} - 3\sigma) \leq \text{해당사업자의 지수} \leq (\text{평균} + 3\sig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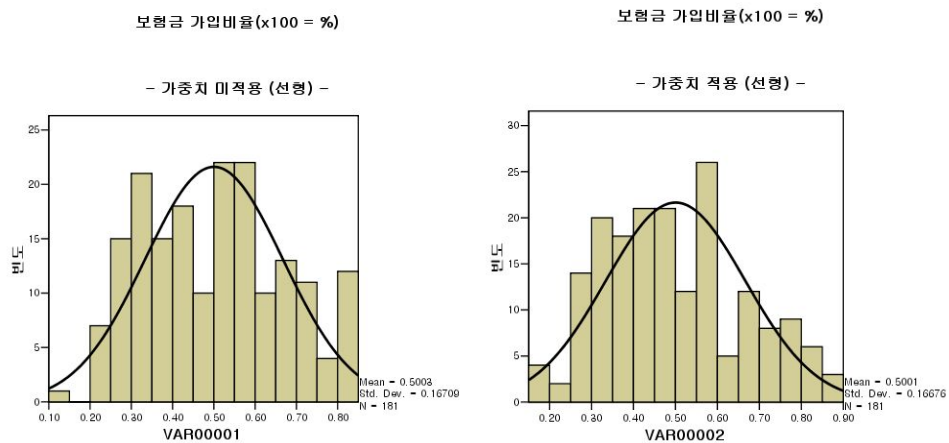


[그림 2-8] Q-circle 가입비율 산출방식

□ 발행총액 대비 보험금 가입비율 결과

○ 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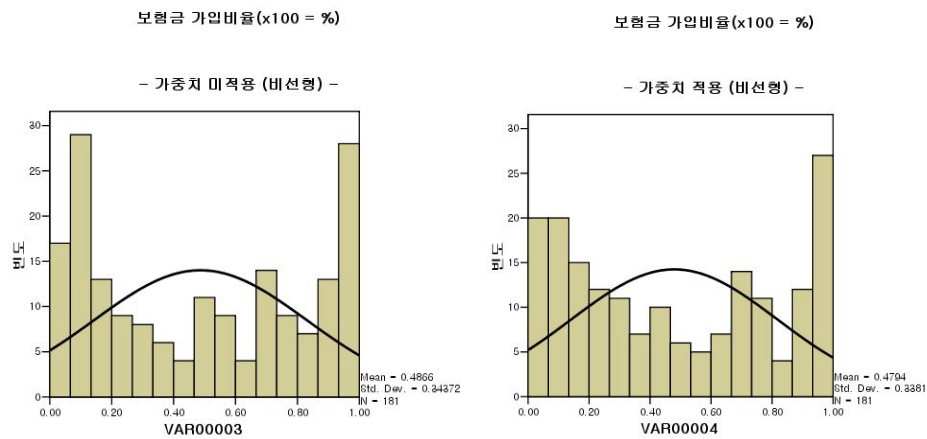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선형의 경우 가입비율이 중간에 모여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형태의 이상적인 정규 분포를 따름
- 따라서, “재정적 능력”에 있어서 매우 양호한 사업자는 가입금을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고 매우 불량한 사업자는 발행총액 전액을 가입비율로 산정하는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모델임



[그림 2-9] 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 비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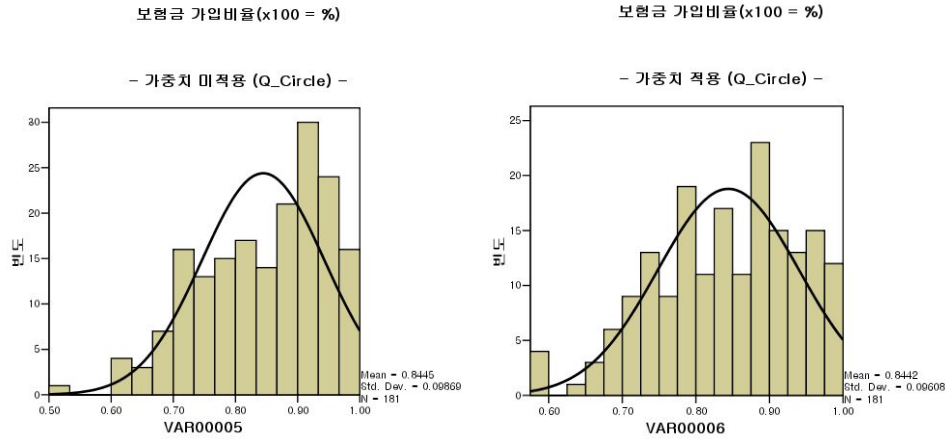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선형의 경우 가입비율이 양측 가장자리에 모여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형태를 보임
- 따라서, “재정적 능력”에 있어서 중간 이상으로 양호한 사업자는 할인 폭이 크지만, 반면 “재정적 능력”이 중간 이하로 양호하지 않은 사업자는 할증폭이 가중되어 더 증가하는 모델임



[그림 2-10] 비선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 Q-circle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Q-Circle의 경우 가입비율이 100%에 가깝게 모여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형태를 보임
- 따라서, “재정적 능력”에 비해 모든 사업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가중하는 모델임



[그림 2-11] Q-circle 방식에 의한 사업자 분포

다. 이용요금을 반영한 보험금 가입비율 산정

□ 적용방법

-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험금 가입비율에 2장의 나 “가입비율 산출 산식” 유형 중 최적으로 판단되는 방안을 하나 선정하여 적용
 - 보험금 가입비율 = 재정적 능력에 의한 가입비율 중 최적 가입비율 산식
 - “이용요금”은 기업 총 매출액 대비 선불발행 총액으로 정의
 - 이용요금 = 선불발행 총액 / 기업 총 매출액
- ※ ‘08년 기준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실적이 있는 35개 사업자 중 24%가 보험금 가입비율이 1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보증보험금 가입금액 산정

□ 적용방법

-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을 모두 고려하여 선불발행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의 보증보험금 가입금액으로 정의
 - 보증보험금 가입금액 = 선불발행총액 × 재정적 능력 × 이용요금
-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모든 부문에서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을 낮추어 책정할 수 있고, 반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함

3. 보증보험금의 갱신 및 지급절차

□ 시행령에 의한 방법 I

-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는 시행령에 마련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산정기준·보증보험 가입금액, 영 제37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이 방법은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에 대한 운영기능만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 규제기관이 전체적인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사업법(개정안)	시행령(수정안)
제33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u>처리하기</u>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u>알려야</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u>제33조의2에 따른다.</u> ③ 기간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근 3년 간 전기통신업무 매출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이며, 당해 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발행한도가 전체 전기통신업무 매출액의 10% 이하이면서 선불통화권 관련 서비스 제공의 중단, 휴지, 폐지 등의 행위가 없었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자기 자본 잠식상태에 있거나 선불통화권발행행실적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근 3년 간 선불통화권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총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보험에의 가입 :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사(부)본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의 갱신 : 보증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발행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그 사(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의 가입조건은 그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보증보험에의 재가입 : 선불통화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때에도 선불통화권 발행 30일 이전에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금의 지급절차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증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해당사업자,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금액, 추가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금액이 보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안분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이용자에 대한 고지 :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요금잔액확인 등 이용방법,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 시 연락처, 보험가입 사실, 그 밖의 제한 사항 및 이의 고지방법 등을 선불통화카드나 온라인 판
--	--

	매 사이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근 3년 간 매출액 및 선불통화권 발행 규모 기타 관련 입증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산정기준·보증보험 가입금액, 영 제37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들 전체의 전년도 발행액, 사업자별 발행 실적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실사 및 평가를 통해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업무 일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시행령에 의한 방법 II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산정기준·보증보험 가입금액에 대해서 고려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
 - 단,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출방식과 보증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에 상세히 마련
- 이 방법은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에 대한 운영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

□ 별도 고시에 의한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산정기준·보증보험 가입금액, 영 제37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재가입, 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이 경우는 현재와 같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선불통화권 관련 관리기능을 갖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

제 3 절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1.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일본

-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약칭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통신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에 속함(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12호)

□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 범위

-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 또는 국제계약(법 제7조의2 제1항)
-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 및 국제계약의 유형
 - 상품 내지 역무의 대가와 관련된 경우
 - 상품 내지 역무에 대하여 다음의 하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 공급량 및 구매량, 시장점유율 및 거래상대방
-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도 법 제7조의2 제1항 준용(법 제7조의2 제2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경우,
 - “피지배사업자”가 공급한 상품 내지 역무에 대하여
 - 그 대가에 관한 경우
 - 공급량, 시장점유율 및 거래의 상대방 중의 하나에 속하여 실질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동 조항과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 참조
-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실행기간”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행위의 사업활동의 실행행위 시

점부터 종료된 날까지

-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실행행위가 없어진 날부터 3년

□ 과징금액의 산출 방식, 요율 및 감면 비율 등

○ 과징금액의 산출(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

- 당해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하여 시행령(영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에 100분의 10(제조업), 100분의 3(소매업), 100분의 2(도매업)
-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면제
- 법 제7조의2 제2항의 경우, 시행령(영 제7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 구입액
 - 피지배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 또는 역무¹⁴⁾의 매출액
 - 피지배사업자에 대해 공급한 상품 또는 역무를 제외한 당해 일정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사업자가 공급한 당해 상품 내지 역무의 매출액

○ 과징금의 감면 비율

- 법 제7조의2 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액의 비율은 「100분의 10」인 것은 100분의 4로 하고, 「100분의 3」인 것은 「100분의 1.2」로 하고, 「100의 2」인 것은 「100분의 1」로 각각 감액(법 제7조의2 제4항)
- 법 제7조의2 제5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경우,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건에 대해 법 제47조 제1항 4호 및 법 제102조 제1항의 조사개시일 1월 이전이고 “실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 제1항 중 「백분의 10」에 의한 것은 「100분의 8」로, 「100분의 3」

14) 당해피지배사업자가 당해행위에 관계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상품 내지 역무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내지 역무를 포함

에 의한 것은 「백분의 2.4」로, 「100분의 2」에 의한 것은 「100분의 1.6」으로 하고,

- 제4항 중 「100분의 4」에 의한 것은 「100분의 3.2」로, 「100분의 1.2」에 의한 것은 「100분의 1」로, 「100분의 1」에 의한 것은 「100분의 0.8」로 감액함

○ 과징금의 가중(법 제7조의2 제6항)

- 제1항 및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에 있어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
- 제1항 중 「100의 10」에 의한 것은 「100의 15」로, 「100의 3」인 것은 「100분의 4.5」로, 「100의 2」인 것은 「100의 3」으로 할증함
- 제4항 중 「100의 4」인 것은 「100의 6」으로, 「100의 1.2」인 것은 「100의 1.8」로, 「100의 1」인 것은 「100의 1.5」로 할증함

나. EU

-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6월 조약 81조(카르텔 및 반경쟁적 합의(담합) 금지) 및 2008년 12월 3일 제82조(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제재금) 가이드라인을 개정

□ 2006년 6월 전·후의 규정의 주요 변경 내용

- 종래의 1998년 가이드라인은 벌금 산정 과정을 4단계로 규정
 - 기본벌금 산정, 가중벌금, 감경벌금, 벌금감면 사유 고려
-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단계로 단순화시킴
 - 기본벌금 산정 및 사건정황에 따른 조정절차로 간소화
- 개정 가이드라인은 1998년의 가이드라인은 기본벌금의 산정에 있어 범위 반행위의 중대성 및 법 위반 기간만을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그 예측이 매우 곤란하였음
 -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은 범위반 관련 매출액에 근거하여 산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예측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 기본벌금(basic amount)의 산정(가이드라인, 12~26; 2006/C 210/02)

- 우선, 유럽경제구역 내에서의 범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
 - 범위반행위가 있는 마지막 연도의 연간 매출액을 의미
 - 간접매출액도 포함 : 카르텔의 경우, 해당상품(카르텔 상품)의 가격이 그보다 낮거나 높은 품질의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관련 매출액에 포함
- 매출액의 산정은 범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범위반년수를 곱하여 산정
 - 범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성격, 시장점유율의 합계, 지역범위, 위반행위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30% 이내에서 결정
 - 위반 년수는 6월 미만은 0.5년으로, 6월~12월은 1년으로 계산
-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의 가중
 - 카르텔 가담을 억제하기 위해 카르텔의 경우, 가담벌금으로 15~25% 가중

□ 기본벌금의 1차 조정(가중 또는 감경)(가이드라인, 27~29)

- 위와 같이 산정된 기본벌금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또는 감경
- 기본벌금에 가중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카르텔 및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경우, 행위마다 100%까지 가중¹⁵⁾
 - 개별적인 EU 회원국의 당해 사업자에 대한 범위반 결정도 반복 위반으로 계산하여 가중
- 기본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 범위반 행위의 중단
 - 과실에 의한 범위반

15) 개정되기 이전의 1998년 가이드라인에서는 1회에 한하여 50% 가중

- 조사에의 협력
- 정부시책에 따른 행위

□ 기본벌금의 2차 조정(가중)(가이드라인, 30~31)

- 관련 매출액보다 총매출액이 훨씬 많은 경우
 - 가이드라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으나, 범위 반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우선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산정된 벌금액이 범위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보다 적은 경우

□ 벌금의 상한 및 감경(가이드라인 F. Ability to pay, 35.)

- 다만, 벌금의 총액은 「Article 23(2) of Regulation No 1/2003」의 조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전년도 총매출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가이드라인, 32)
-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벌금의 부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수행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당해 사업자의 모든 자산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경우와 같은 개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금을 감액하여 줄 수 있음(가이드라인, 35)

※ 기본벌금의 산정 절차 예시

- 1단계 : 관련 매출액 × [범위만행위의 중대성(최대 30%) × 범위만행 수(ex. 5년) + 가담벌금(15~25%)]으로 계산 하는 경우, 최고 관련 매출액의 175%까지 산정될 수 있음
- 2단계 : 또한 상기의 기본벌금을 산정한 후에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
- 3단계 : 사건이 3개국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CN Model Leniency Programme¹⁶⁾의 적용을 통한 최종 제재금 결정

16) European Competition Network (ECN)'s model leniency programme (29 September 2006). 동 프로그램은 회원국 간의 제재금의 완화 등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EU 국가들 중 3개국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다. 영국

- Ofcom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 Chapter II의 규정을 적용하게 됨
- Ofcom의 Director은 경쟁법 Chapter I or Chapter II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36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경쟁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제재금의 산정 방법 등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음

□ 경쟁법상 금지행위에 부과되는 제재금 산정

- Director은 제재금의 적절한 수준에 관한 Guidance를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개정하려는 경우,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38조 제4항)
- 제38조에 따른 Guidance를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야 함(제38조 제6항)

□ 경쟁법 제38조에 근거한 Guidance에서의 제재금 산정

- 제재금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의 5단계를 거침(Guidance, 2.1)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고려한 시작점(starting point)의 산정
 -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 다른 요소들에 의한 조정
 - 가중 또는 감경요소들에 의한 조정
 - 제재금의 최대치가 사업자의 전세계(worldwide) 매출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이중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의 조정
- 1단계 : Starting Point의 산정

- 위반행위의 중대성(seriousness)과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
- 관련 매출액은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 시장 및 지리적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말함 (Guidance, 2.7)
- Starting Point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Guidance, 2.8)
- 2단계 : 기간(duration)의 산정(Guidance, 2.10)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위반행위의 년 수 보다 적게 곱할 수 있으며,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음
- 3단계 : 다른 요소들에 의한 조정(Guidance, 2.11)
 - 1단계와 2단계에서 고려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조정 단계로써, 제재금의 정도를 위반사업자에게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단계임
 - 이 Guidance에서의 정책적 목표는 사업자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의 관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임
 - 따라서 사업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제재금의 증가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Guidance, 2.12)
- 4단계 : 가중 또는 감경요소들에 의한 조정
 - 가중요소 : 위반행위의 주도 또는 선동의 역할 여부, 이사 또는 고위 임원의 관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복행위 인지의 여부, 조사 개시 후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반복, 고의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영업상의 보복으로서의 위반행위인지의 여부(Guidance, 2.15)
 - 감경요소 : 심각한 강박 또는 압력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합의 또는 행위의 불확실성, 법 준수를 위해 취해진 충분한 조치였는가의 여부, 과실에 의한 위반 및 집행절차에의 협력

(Guidance, 2.16)

○ 5단계 : 제재금 상한의 초과 방지 및 이중위험 회피를 위한 조정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Guidance, 2.17)

- 상한액의 조정은 다른 단계에서의 조정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카르텔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정 상한액의 조정이 먼저 이루어짐(Guidance, 2.18)

2.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부과기준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I. 협정체결 거부 등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을 법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3.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II. 정보유용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회계 및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2. 제1호 외에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III.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상법」 등 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일정한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3.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IV. 이용자 이익 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변경관련신청서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 나.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하여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다. 사전선택등록센터에서 가입자 의사확인 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신청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명의 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요금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요금연체정보 제공사유의 해소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외의 행위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제46조 관련)

I. 위반행위 중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액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법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3.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II.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 1)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 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 4)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필수적 가중

- 1) 기준금액에 법 제3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 법 제3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 2)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III. 세부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면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 금액
(제61조제1항 관련)

1. 매출액 대비 과징금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허가·인가·승인·또는 등록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 제28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
2.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법 제15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이하	-	-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 제1항제2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5.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 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6.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6호, 법 제28조제1항제5호, 법 제28조제2항제4호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억원 이하	4억원 이하	-
2.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3호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4호	8억원 이하	-	-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5호	8억원 이하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 제1항제2호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6.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	법 제65조 제1항제3호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하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6호, 법 제28조제1항제5호, 법 제28조제2항제4호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3. 별정/무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향

□ 별정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유형

- 과징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내고지 시간동안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전
화정보사업자의 상호, 문의전화번호, 서비스내용,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
신호음을 고지하지 않는 060 전화정보사업자
-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간동안의 과금행위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②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의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 관련

- EU 및 영국 등의 국가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련 매출액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상품 및 서비스와 그로 인해 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산정에 있어 그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의 기업 운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과징금의 산정에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매출액의 정의를 EU 등의 사례를 모범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지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 산정 요율 및 상한액의 마련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에서는 개별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본요율 및 상한액에 차등이 있음
 - 즉, 금지행위의 유형별로 소비자 내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적은 것은 과징금의 건당 내지 기간별 부과액을 적게 하고,
 -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이중규제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 위에서 분석한 국가들의 경우, 방송통신에 관하여 전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문규제기관이 독점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카르텔·담합, 시지남용 및 기타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첩적으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즉, 해외의 경우 전문규제기관과 경쟁당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문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공동으로 관할권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종래부터 논의는 되었지만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의 기업들의 활동반경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3 장 국내 별정통신 제도개선 방안

제 3 장 국내 별정통신 제도개선 방안

제 1 절 별정통신사업자 분류체계 통합방안

1.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서비스-별정통신을 중심으로

가.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 분류기준 현황

<표 3-1>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호(설비보유재 판매사업)	2호(설비미보유 재 판매사업)	3호(구내통신사업)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 ¹⁷⁾ 하고, 이를 이용 ¹⁸⁾ 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구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입차 ¹⁹⁾ 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비스 종류	전송역무 ²⁰⁾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²¹⁾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²²⁾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 이외의 역무(인터넷 콘텐츠 등)
진입규제	세부역무별 허가	등록			신고
진입요건	재정	심사대상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 중 설비보유재 판매 사업을 제외한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사업: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	심사대상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3명 이상, 기능계 자격자 2명 이상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명 이상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명 이상, 기능계 자격자 1명 이상	

17) 사업자의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는 행위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음

18)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 또는 타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 설비를 경유토록 하는 행위

19) 타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일정기간 확보하는 행위(※ 현재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와 장기 임차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통신회선설비 설

-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 분류는 설비설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의 세부분류 기준

- 별정 1호 사업자(설비보유재판매사업)는 교환설비²³⁾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이고, 별정 2호 사업자(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는 단순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로 구분(단, 임차 등을 통한 이용의 개념 포함)

□ 별정통신사업의 진입규제의 세부구분

- 현행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진입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적용 “재정적인 능력”과 “교환설비” 설치유무를 기준으로 제한
 - “재정적인 능력”은 단순히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교환설비”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8호에서 정의하는 설비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치 여부에 따라 기간과 별정을 구분하는 것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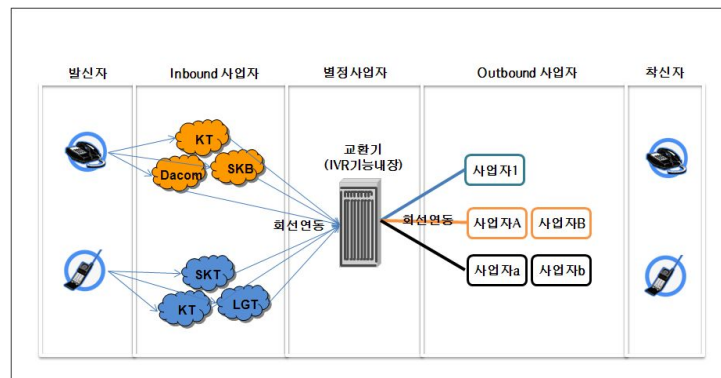
- 20)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21)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2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단,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 제외
- 23) 단, 서버와 라우터 등은 교환설비 범위에 속하지 않음

나. 별정통신사업의 서비스 종류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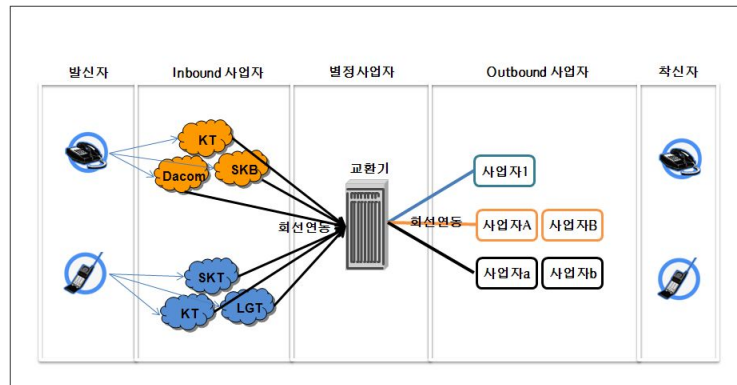
○ 음성재판매(Voice Resale)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 역무를 제공
- 서비스 사례 1 : 교환기를 이용한 080 선불서비스
 - 발신자 맥내의 전화단말에서 전화를 걸면 KT, SK 브로드밴드, 데이콤 등(이동단말의 경우는 SKT, KT, LGT)의 맥내 전화서비스 사업자의 회선을 거쳐 별정통신사업자의 호 라우팅 기능이 있는 080 교환기를 경유하여 연동사업자의 회선을 통해 착신자 맥내 단말기로 연결되는 구조의 서비스



[그림 3-1] 교환기를 이용한 080 선불서비스

- 서비스 사례 2 : 일반 식별번호 후불 국제전화
 - 교환기를 이용한 080 선불서비스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다만 선불통화카드 인증을 위한 IVR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그림 3-2] 일반 식별번호 후불 국제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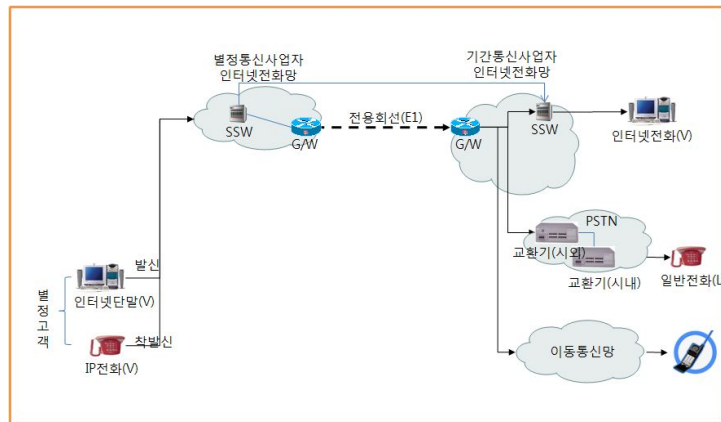
○ 인터넷폰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기업, 개인)
-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것은 제외
-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망과 접속 또는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W)²⁴⁾와 게이트키퍼(G/K)²⁵⁾, 프록시(Proxy)서버, 소프트스위치(SSW)²⁶⁾ 등 호 처리용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말함

24) 회선교환망 (SCN : Switched Circuit Network) 의 Endpoint 와 H.323 단말기 간의 통신을 위해 필요. Audio, Video, Data 의 전송규격 및 프로토콜 등의 변환 기능을 담당

25) H.323 Endpoint 들 간의 호 처리 서비스 와 사전 호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Voip Network 의 Brain 역할을 수행

26) C4(Class-4)급의 교환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망관리, 호제어/처리, 과금통계, SS#7의 신호처리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VoIP메인시스템



[그림 3-3] 인터넷폰

○ 콜백서비스(국제)

-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

○ 국제 전용회선 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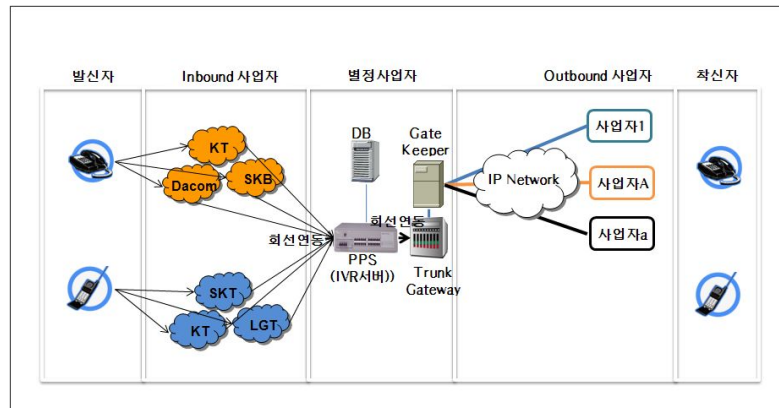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별정 2호

○ 재과금

-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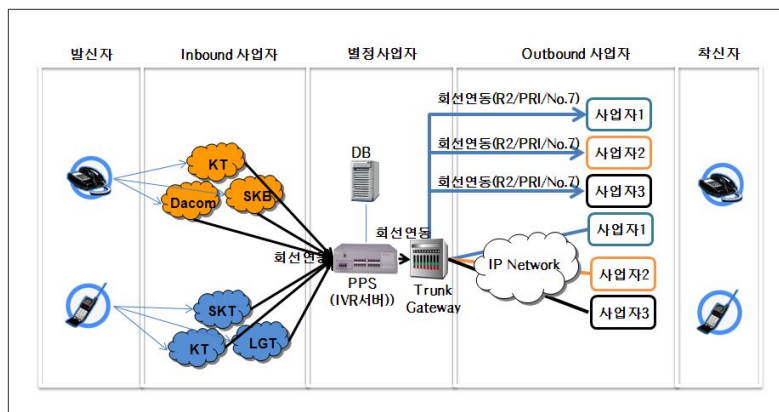
○ 가입자 모집

- 기간통신사업자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여러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음(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음)
- 서비스 사례 1 :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와 Gate Keeper 이용)



[그림 3-4]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와 Gate Keeper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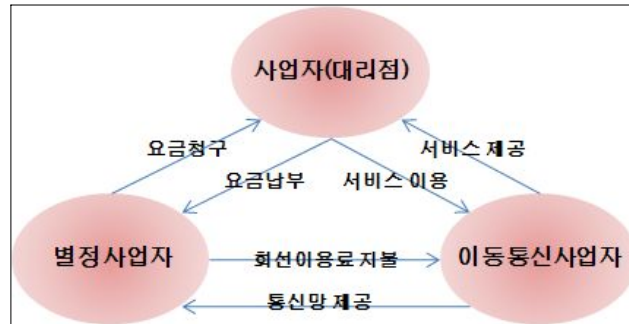
- 서비스 사례 2 :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 이용)



[그림 3-5] 080 선불카드 서비스(PPS 이용)

○ 무선재판매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이용료를 지불하고 통신망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



[그림 3-6] 무선재판매 서비스

○ 인터넷폰

- 별정 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연동설비와 호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구내통신 사업-별정 3호

○ 구내통신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 구내교환기 및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2.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

가.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 호별 분류기준의 문제

-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교환설비”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한 수직적인 호별 구분은 회선교환과 패킷교환, 더욱이 이들 간에 상호교환이 존재하는 현행 전기통신망에 적용하기는 부적합

- 교환기능을 보유한 설비임에도 제정의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아직 정의되지 않은 설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모순이 존재
- 별정통신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과 설비설치 기준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공정경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현행 호별 구분은 오히려 별정 2호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자간 불공정과 역차별을 초래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 더욱이 향후 전송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어, 우선적으로 별정통신의 수직적 호별 구분의 개선이 필요

□ 신규서비스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

-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정통신사업자의 신규서비스 제공과 새로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진입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별정 2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별정 2호 위주의 별정통신시장 확장은 설비미보유에 따른 서비스 자체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낮은 재정적인 능력에 따른 사업 부실화 가능성이 커서 신규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동망에서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전송망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설비보유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에 대하여 적합한 지위 부여를 위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도매제공제도 도입 초기에 혼돈을 야기할 수 있음
 - 현행 국내 역무 및 사업자 분류 체계 하에서 무선재판매는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 2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전송로와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지위도 별정통신의 호별 분류에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또한 교환설비에 따라 구분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현행 별정통신사업자 진입조건에 따르면 교환설비 이외의 설비설치 및 보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갖가지 형태의 가상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적합한 지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에 대한 선제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

나. 설비기준 구분의 한계

□ 교환설비의 정의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
 -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제12호
 -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제18호
 -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 ※ 과거 서울체신청 사업자 분류에 따르면,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사업자는 별정 1호, 게이트웨이(G/W)는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사업자는 별정 2호로 구분함

□ 교환설비의 발전

- 별정 2호 사업자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에 따라 게이트웨이와 같은 교환설비를 보유함에 따라 별정 1호 사업자와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

- IP장비의 진화로 인해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교환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서버, 라우터, PPS 등)의 개발 및 이를 도입한 신규사업자의 등장
- 060 전화정보서비스의 경우 ARS 장비를 통해 법률상담, 운세상담, 음성채팅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 대화형 연결을 통해 제공하여 PC내 음성보드의 성격이 교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정 2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
 - 기본적으로 회선을 임대(기본적으로 30회선 이하로 사용 중)와 ARS 장비를 구성한 상태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 060 이용자가 발생시킨 호는 KT 지능망 교환기에 접속하고 이는 ARS 장비를 거쳐 KT 전용회선과 KT 교환기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해당 서비스사업자에 접속하게 됨
 - 정산은 먼저 KT가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모두 합쳐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추후에 정보이용료에 한해서 1:9의 비율로 별정 2호와 배분
 - ARS 장비에서는 안내멘트, 과금기록(billing 기능은 없음), 호 연결의 기능을 갖고 있음
- PPS 장비를 이용하여 선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
 - PPS 장비는 IVR(안내멘트) 송출기능, 카드번호 인증기능, 선불카드 과금 기능, 번호별 라우팅 기능 등의 주요 기능을 구비한 장비
 - PPS 장비는 사실상 교환기(IVR 기능 내장)의 기능과 동일함으로 교환설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
 - 별도의 교환기가 필요 없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선불카드 서비스가 가능하여 별정 2호 사업자들이 주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060 ARS 음성보드와 차이점은 카드번호 인증기능이 추가된 장비라 성격을 정의할 수 있음

다. 재정적인 진입장벽의 차이

□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의 양산

- “재정적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은 일부 별정통신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별정 2호로 타인자본을 차입한 후 등록조건을 만족한 후 회수하는 유형의 편법등록 수단으로 악용

3. 단계적 별정통신 호별 통합방안

가. 호별 통합의 필요성

- 별정 1호와 별정 2호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설비가 명칭만 상이하지 기능 자체는 실질적으로 교환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차별을 두고 있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 이러한 교환설비 설치를 기준으로 한 수직적 규제체계는 기술의 발전 및 전송계층과 서비스계층을 분리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의 호별 통합은 3개 역무를 단일 전송서비스로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음
 - 별정 3호는 구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별정 1, 2호 역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통합 논의에서 제외함
- 호별 진입장벽의 차이는 재정적인 능력이 열악한 별정 2호를 위주로 별정통신 시장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별정통신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담보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호별 통합방안이 절실한 상황
 - ‘09년 8월말 기준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민원이 776건(‘08년 총 민원 건수는 806건)으로 별정 2호사업자에 관련된 민원 건수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에 도달
- 융합화에 따른 서비스간 교차진입 등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여

건이 필요한 시기에 별정통신사업자의 호별 구분은 활성화를 위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있음

- 개정 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제도 도입으로 별정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 가상이동망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교환설비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 방식은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나머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별정 1호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정 2호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
 - 이는 교환설비(MSC, CGS, GMSC 등)가 아닌 전기통신설비인 가입자 정보저장장치(HLR: Home Location Register)만 설치하고 사업하는 경우에 교환설비 설치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존재

나. 별정 1, 2호간 통합방안

- 현재의 별정 1, 2호간 구분은 단순히 교환설비 설치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과 자본금 기준에 대한 재조정을 통한 별정통신시장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자본금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
 - 현재 별정 2호의 경우 납입자본금 기준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별정 2호의 경영부실로 결부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조정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통합 시 납입 자본금의 적정선은 향후 별정 2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함
 - 이는 자칫 시장 활성화라는 별정통신사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별정사업자에 대한 자본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함

- 호별 통합시 설비기준과 납입자본금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설비기준은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진입규제를 없애고, 다만 재정적인 기준은 납입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의 재정적 건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통합해야 함
 -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재정적인 능력의 판단은 자본금 규모가 취약한 별정통신사업자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 부적합 (종합적인 재정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도입 필요)

다. 가상이동망사업자의 진입규제 방안

- 가상이동망사업자의 경우 그 진입 단계에서 교환설비(MSC, CGS, GMSC 등)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현재의 별정통신 등록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교환설비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현재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수평적 규제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음
 - 다음으로 호별 진입규제의 차별이 없어진다면 가상이동망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의무 및 권한을 갖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
- 그러나, BTS(Base Transceiver Station) 여러 대에 MSC(Mobile Switching Center) 한 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가상이동망사업자 유형별 전국적인 MSC 설치기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지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제외한 타 교환설비에 대한 기준 역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기지국-가상이동망사업자의 교환국 또는 기간-가상이동망사업자

의 교환국간 회선 등 회선임대에 대한 방안도 우선적으로 개정(안) 전
기통신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되어야 함

제 2 절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합리적인 차등규제 방안

1. 규제환경 변화와 차등

가.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 변화

-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따라 설비제공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
- 이는 향후 별정·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협정체결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를 의미
- 그러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에서는 변경없이 기존에도 “가입자선로”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을 요청할 자격이 있어 원칙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
- 또한,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상호접속)에서도 변경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할 자격이 있어 원칙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
 - 그러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제2항에서 정산의 주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 적용
- 더욱이,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이 추가된 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도매제공, 즉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어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이용 및 이에 대한 대가산정에 있어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표 3-2> 전기통신사업법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u>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u>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u>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하면</u>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u>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u>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u>제공함에 있어</u>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u>제공하는 데에</u>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u>동항 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u>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u>범위안에서</u>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를 <u>제공하기</u> 위하여 필요한 <u>범위에서</u>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표 3-3> 전기통신사업법내 상호접속의 대가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 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 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 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 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접속 차등

□ 설비제공 및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제도

<표 3-4> 설비제공제도와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비교

구분	설비제공제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제공대상	제공사업자의 선로설비 일부 및 전용회선	동선 기반의 가입자선로 또는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xDSL/HFC) * 광케이블은 제외
이용범위	허가받은 사업범위내 이용사업자 자율 결정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한정
제공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자가통신사업자	가입자동선 보유 시내전화사업자 및 초고속가입자 50만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제공사업자	필수설비 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없음
배타성	이용사업자의 배타적 사용	선로공동이용 가능(Line Sharing)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와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의 불일치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시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 불일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로 정의한 반면,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 ...”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회선설비 범위를 초과하여 설비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설비제공 고시의 경우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²⁷⁾의 제공 요청시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사업자간 협정을 위한 대가산정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상황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27) 송·수신 장소간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조합·접속·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로(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3조의4)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삭제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17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제공대상설비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9조 내지 제27조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 설비제공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별정통신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요청할 자격이 없으며 이용약관에 따라 전용회선의 형태로만 제공받을 수 있음

- '07년 정부의 규제정책 로드맵에서 별정통신사업자도 설비제공제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선설비의 일부인 전송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 별정통신사업자는 광고아를 저렴하게 제공받아 전송설비를 부착하여 부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용약관에 따라 전용회선을 이용해야만 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와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간의 다량 할인에 따른 차별은 별정과 기간의 제도적 차이가 아닌 합리적인 차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음
- 또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도(기준)에 있어 별정·부가통신사업자는 동선일괄제공이나 고주파수대역분리제공을 적용할 수 없고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개방의 형태로만 적용이 가능하나, 이용대가가 소매요금에 비해 너무 높아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통한 시장 집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경우 '02년 고시제정 당시 보급률이 낮았던 광가입자망을 의무제공설비에서 제외
 - '03년 설비제공기준 개정 당시 투자유인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을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동선가입자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함
- 설비제공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은 별정통신사업자가 “전송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 SK브로드밴드, 데이콤과 같이 동선 가입자 선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따라서, 가입자선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와 같이 전송설비를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활용처가 없는 상황)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²⁸⁾로 규정하고 이용사업자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설비제공 대상에서 별정통신사업자가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설비제공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중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 제공제도를 통해서도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나 이 또한 의무제공사업자 지정이 없어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님

□ 상호접속제도

28)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제34조제3항제2호·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상호접속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34조의2에서 상호접속의 대가산정에 있어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한다는 이유로 상호접속의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간으로 한정 적용되고 있음
-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상호정산 방법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상호접속이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제34조 (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5항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 즉 이들 간에 망을 연동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
-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연동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 중간 생략 -----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삭제)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적용은 제1조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의5의 제1항에 의하면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29조5항에 의해 별정통신사업자의 법적인 지위가 이용자의 지위로 규정한 상황에서, 실제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사업자의 지위로 해석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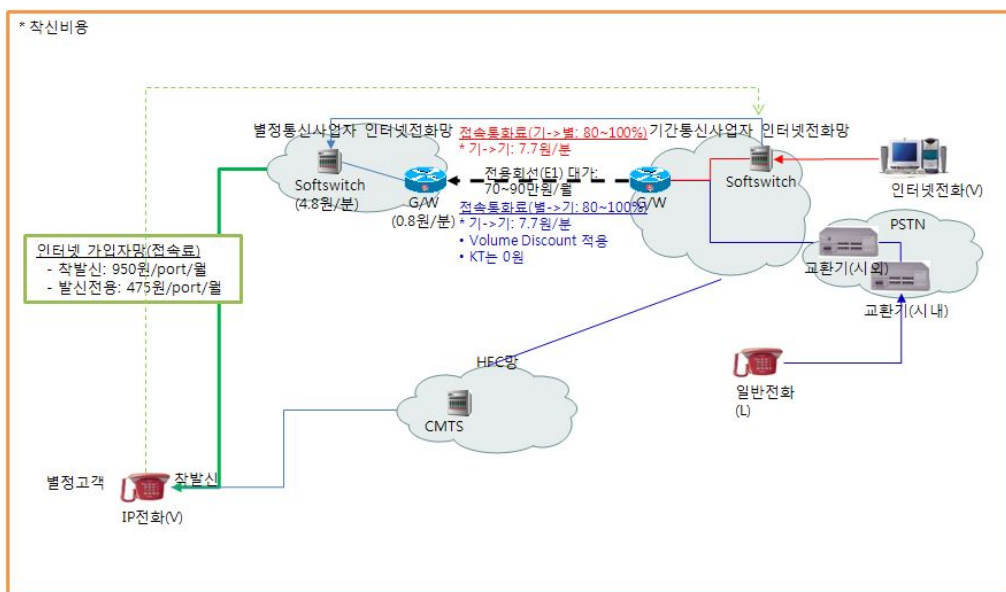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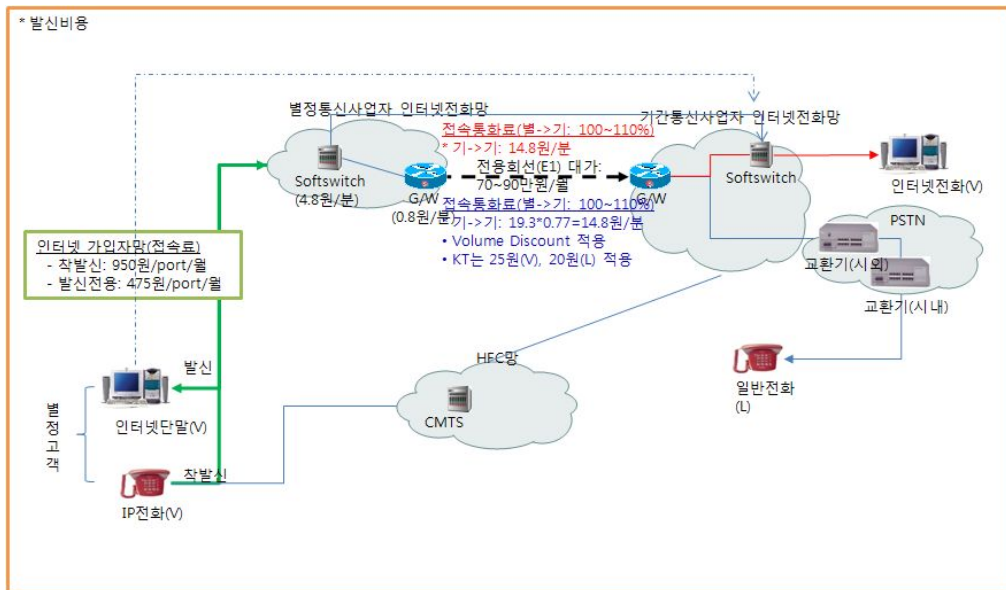
다. 기간-별정간 이용료 정산 (대가 산정)의 차등

1) 인터넷전화 기간-별정간 정산시 차등문제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제22조의5)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접속유형에 따른 차등
- 인터넷전화망(소프트스위치와 게이트웨이로 구성)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하여 정산

- 인터넷망 접속료에 있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하게 적용되나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에 있어서는 상호접속 고시의 접속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 별정 1호의 경우,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만 착발신에 대해 950원(port/월)을 기간통신사업자에 정액 지불하고 있고, 발신전용에 대해서는 이의 50%인 475원(port/월)을 제공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데이콤 등 가입자회선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에 정액 지불²⁹⁾
-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상호접속 고시에 따라 접속료를 정하고 있지만,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의존하는 상황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적 요소로 작용
 - 향후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자 지위 획득시 접속유형의 이해와 실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
- 별정 1호(교환설비 보유) 인터넷전화
 - 별정 1호는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번호부여 방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직접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와 이들로부터 재부여 받은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별정 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만 단위로 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사업자는 등록요건에 따라 교환설비(소프트스위치/게이트키퍼, 게이트웨이)를 설치함으로써 접속점이 기간통신사업자(16개 번호권 40개 이상) 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상황
 - 별정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망과 게이트웨이로 연동되거나, 소프트스위치로 직접 연동되는 형태가 있음

29)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원가는 월간 가입자당 원가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초고속인터넷 사용량 중 VoIP서비스의 사용량 비중을 곱한 수치를 초고속인터넷 사용량으로 나누어 망 이용대가를 산정('08년 이후 적용)



[그림 3-7] 별정 인터넷전화 발·착신호의 흐름 및 대가

○ 인터넷전화 접속료 현황

-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에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

- 가입자 구간 등을 반영하여 '07년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분당 5.5원에서 '08년 분당 7.7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전화(인터넷전화망 발신 -> 시내전화망 착신)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

<표 3-5> 인터넷전화 접속료

(단위: 원/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	5.5	7.66650	7.6674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 ³⁰⁾	18.9849	15.0035	14.8696

○ 별정 1호의 타 사업자와 연동 상황

-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연동점의 개수(10여개 정도를 요구)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 인터넷전화역무(기간은 9개 사업자)를 제공하는 기간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연동된 상태이고,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연동계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중 SKT와 LGT는 상용연동 전환은 수용하더라도 착신대가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러한 개별계약에 따른 연동하고 있는 사업자마다 발·착신 요율이 서로 다르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착신대가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
- 더욱이 발·착신 요율에 있어서도 별정통신사업자 착신대가는 기간-기간의 인터넷전화망 접속료의 80%~100%³¹⁾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별정통신사업자 발신대가는 100%~110%를 적용하므로 차별적 요소로 작용

30) 일반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의 23% 감면 (즉, $14.8696 = 19.3112 \times (1-0.23)$).

31) 예를 들어, 기간-별정의 경우는 일반전화 접속료 19.3원/분 $\times$ 1.10 = 21.8원/분의 접속료를 부담시키는 반면 기간-기간의 경우는 13.3원/분 $\times$ 0.77 = 14.9원/분의 접속료를 부담시켜 6.8원/분의 기간과 별정간 접속료 차이를 발생시킴.

- SMS호의 발·착신 접속료의 차별적 적용
 - 기간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SMS호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역무이므로 상호접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접속 고시에 따른 접속료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번호부여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SMS호는 사업자별로 적용 형태가 서로 다르고, 인터넷전화망으로 착신되는 SMS호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인터넷전화망을 직접 구성한 경우라도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SMS호에 대해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으며 착신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사업자간 형평성의 문제 야기
-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 감면의 혜택에서 제외
 - '08~'09년도 유·무선전화망 접속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자료에서 인터넷전화망 발신 시내전화망 착신호에 대해서는 시내망 접속요율(19.3112원/분)의 23%을 감면한 접속요율(14.8696원/분)을 적용하기로 결정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감면혜택으로서, 개별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약 20원/분 정도의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침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호에 대한 접속료 정산(* 번호이동 참여 별정통신사업자에 한정) 시 발신사업자별로 별정망 착신 적용요율이 상이하고, 착신 연동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LV/VV³²⁾ 번호이동 호에 대한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움
 - 별정사업자가 최종 착신사업자(변경후 사업자)인 경우는 변경전 사업자가 별정사업자 접속료 몫까지 수취
 - 별정통신사업자가 변경전 사업자인 경우는 발신사업자로부터 접속료의

32) LV: 일반전화 → 인터넷전화; VV: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일부를 받고 변경후사업자에게는 정상적인 접속료 또는 그 이상의 접속료를 지불함으로써 접속료 정산 수지 악화를 초래

- 특히, 이동망 발신인 경우 접속료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정산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 번호부여 별정 인터넷사업자는 기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번호이동 절차 마련 및 투자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실제 번호이동 호에 대한 접속료 적용의 대상이 못됨

<표 3-6> 이동망 발신 번호이동호의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료 배분

(단위: 원/분)

발신	번호이동호 유형	번호이동 접속료	변경전 사업자 수익	변경후 사업자 수익	별정사업자 정산 수지
이동전화	L(기간)->V(별정)	19.31	7.32	11.99	정상요율
	V(기간)->V(별정)	7.67	0	7.67	정상요율
	V(별정)->V(기간)	7.67	0	7.67	정상요율

2) 국제전화 기간-별정간 정산시 차등문제

- 국제전화 호에 대한 대가 산정시 기간-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상호접속 고시에서 정하는 접속료를 대가로 지불하지만, 별정-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해 별정통신사업자가 접속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적용받는 상호접속료의 최소 2배 이상으로서 기간-별정간 차등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음
 - 이용약관 신고(또는 인가)시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원가기반의 요금산정 시 발생
 - 더욱이, 이동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연동요금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이용료 개념으로 일정액을 부과함

<표 3-7> 연동대가 및 대행수수료 비교표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료	과금대행료	접속료	과금대행료
SKT	32.93	3%	79.6	5%
K T	37.96	3%	80.4	5%
LGT	38.53	3.3%	103.0	5.5%

- 유선계 국제전화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한 시내요금을 별정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다량할인이나 할인상품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KT의 전국통일요금제는 가입만 하면 시내·외 요금이 동일하게 39원/분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별정의 국제전화사업자들에게는 시외의 경우 14.5원/10초로 과금하고 있는 상황
 - 더욱이, 무선계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유선계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선비스에 대한 과금 대행도 하지 않음
- 별정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연동(전용)회선에 대한 회선비용을 기간-별정간 상호간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전액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문제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만 이용해야만 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3) 선불카드 기간-별정간 정산시 차등문제

-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접속원가는 상호접속 고시에 정해진 접속료로 상호 정산하지만, 별정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접속원가는 상호접속료에 약 1원 정도를 가산하여 정산
 - 더욱이 과금신호 지연에 따른 부담을 접속원가에 가산함으로써 기간과 별정간의 접속원가 수준을 더욱 크게 적용하여 정산

<표 3-8> 선불통화권 사업자별 원가계산 방식

구분	별정사업자	기간사업자
분당원가	상호접속+1원 수준+불완료율	상호접속 수준
불완료율	20~30%	없음 ³³⁾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 교환설비를 보유한 별정 1호, 특히 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번호를 직접부여 받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
 - ISP로부터 전송망을 직접 확보하고, 번호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가입자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전화계망과 독립적인 인터넷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부과되는 다양한 사회적 규제 측면(번호이동, 긴급통화, 출연금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
- 사회적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별정통신사업의 도입취지인 틈새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확대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임

2. 기간·별정간 차별적 요소에 대한 입장

가. 별정통신사업자

□ 상호접속 적용에 대한 입장

- 번호부여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는 기간과 동일하게 인터넷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직접 인터넷전화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호를 소통시키는 것으로 판단,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접

33) 기간사업자 불완료율이 없는 이유는 이통사에게 과금신호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불완료율을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별정사업자에게는 과금신호 지연을 불허하고 있음.

- 속 절차 및 접속료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
- 현재의 규제상황에서는 일부 시내전화사업자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별정 인터넷전화와 망 연동시 접속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약관을 통한 착신대가는 높게, 지불 접속료는 낮게 적용하거나 동등한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불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 번호부여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는 기간 인터넷전화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접속료 및 접속조건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속권리 보장을 요구
- 모든 별정통신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자는 번호이동 투자, 긴급통화 및 114번호안내 시스템 구축, 품질보장제 적용, 출연금 및 보편적 서비스손실금 납부 등 기간 인터넷전화사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이행 중에 있는 상황
- 별정통신사업자(1호, 2호)내에서의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
-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 요구
-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접속료 비용의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왜곡된 시장 경쟁구조 해소를 통한 경쟁여건 개선 요구
- 별정사업자의 국제전화 요금경쟁력 차원에서 이용약관 신고(또는 인가)시 무선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산정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와 원가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제전화에 있어서 무선계 기간통신사업자의 과금 및 징수업무의 대행에 따른 과금 대행료 부과에 있어서
 - 과금 및 징수업무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금액을 기준으로,
 - 과금 업무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금액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를 산출하여 대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선불통화권 관련 별정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과금신호 지연

을 허가하는 방안 또는 기간통신사업자도 과금신호 지연을 불허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적용 방법

-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상호접속제도의 적용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통상적으로 상호접속기준고시에 따른 접속조건 및 접속료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도 허용됨을 의미하고 있음
 - 만약, 통상적인 접속료 적용대상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인터넷전화망 접속통화료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제1항은 불필요

제22조의5(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①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인터넷전화망 접속통화료를 구성하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방식 적용 필요
 - 인터넷망 접속료에 대해서는 기간/별정간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는 사업자간 협의에 위임하고 있어 협상력이 열악한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인터넷전화망 발신 시내전화 착신호에 대한 접속통화료 할인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도 불투명
- '08~'09년도 접속통화료 결정시 가입자구간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인터넷전화망의 가입자구간인 인터넷망 접속료는 기간/별정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 인터넷망 접속료를 고려하여 산정된 인터넷전화망 접속통화료 또한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 착신호에 대한 부당한 접속회선료 부담

- PSTN 또는 이동망 발신 인터넷전화망 착신호의 접속회선료에 대해서는 요금수익을 확보하고 접속료를 부담하는 발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는 착신사업자가 접속회선료를 부담
 - 접속료 정산(호의 흐름) 흐름상 별정 인터넷전화망 착신호의 접속회선료는 발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기간통신사업자

□ 상호접속 적용에 대한 입장

- 가입자 기반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지위가 아닌 사업자 지위로 변한다 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상호접속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교환설비 설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별정통신사업자는 단지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및 선불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교환설비만을 설치한 사업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기간의 동등한 조건하에의 상호접속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만약 기간-기간의 상호접속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속료를 상호정산 한다면 많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

□ 설비제공에 대한 입장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기준으로 볼 때,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설비제공 협정 체결시 이용에 대한 협정인지, 설비제공에 대한 협정인지 확실한 구분이 가능
-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 가능한 설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사업법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1항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
- 또한 설비제공고시 제5조(제공대상설비 등) 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별정·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이러한 모든 설비를 설비제공을 통해 임차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구분 요구
- 현재 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용약관상에는 TDM과 IP망에 대해서만 임차가능하고 원재료 성격인 관로/전주/광케이블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도 차별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 고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설비제공 고시의 경우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제공을 요청시 동 청약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대가 산정의 경우에도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원가”, “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간 협정체결에 따른 규제완화

- 별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별계약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을 요구
- 기간통신사업자간 협정 체결시에는 다회선 할인 등 규모에 따라 다양한 요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별정·부가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별, 시기별, 서비스별로 다양한 협정이 체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
- 종전의 이용약관과는 달리 협정 체결시 원재료 성격인 관로/전주/광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필요
- 별정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적 영업행태 등의 감시 강화
 -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으로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게 됨
 - 따라서, 별정의 경우 전송역무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을 타겟 마케팅할 것이며, 통신망도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법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 "네트워크 기반"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가산정 필요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예, 하나TV)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망에 추가적인 트래픽을 야기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하여야 할 것임
 -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도 포트(port) 당 95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대용량의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에 대한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제하여야 함

3. 차등규제 합리화를 위한 고려사항

- 현재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과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이라는 큰 틀에서 이용자 지위에서 이용대가 및 접속료를 정산하고 있음
- 더욱이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설비제공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방법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가산정을 위한 표준모델을 정해서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모두 합리적인 수용 가능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차등규제 합리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접속 차등

□ 설비제공과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제도

- 전기통신설비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개념을 포함
- 단,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교환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설비”까지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상황에 처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에 국한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므로, 각 별정통신사업자(1호, 2호)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또한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맞게 변경하여 별정통신사업자가 설비제공이나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내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호접속제도

- 이용약관의 폐지로 인해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자 지위로 격상되는 상황이므로 별정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접속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가를 기초로한 도매대가 개념의 접속료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함

나. 이용료 정산(대가산정)의 차등

□ 합리적인 도매제공 대가산정

- 기간-별정간 도매제공에 대한 대가산정은 기본적으로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소매가를 기초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상호접속료를 비롯한 설비제공에 있어서도 원가를 기초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기간-기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정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상호 공정한 배분체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반면, 기간-별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에 일부 마진율을 더 추가하여 정산하는 것이 차등문제의 핵심임
-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하에서의 대가산정 방식의 합리화와 일부 국내 도입되지 않은 제도의 검토까지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별정간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요인중의 하나로서, 차후에 별정 1호를 기간통신사업자와 통합하는 방법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4. 기간-별정에 적용되는 도매대가 방식

-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송수신 호의 처리 및 설비의 이용(활용)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이미 국내에 실시중인 관련 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아직은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적용 가능한 해외의 관련 제도까지 검토해야 함
- 상호접속의 의무는 주요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미국의 경우만이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유선단순재판매,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UNEs³⁴⁾, 도매회선임대(WLR: Wholesale Line Rental), 간접접속 등의 여러 가지 도매제공 규제제도 상의 대가산정 방식 등을 적용해서 기간과 별정통신사업자간의 합리적인 차등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별정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거나 임대하여야 하며 이 때 각종 도매제공 규제를 적용받게 됨
- 장기증분원가, 소매가할인(retail-minus)방식, 원가가산(cost-plus)방식, 실제원가 등 다양한 대가산정 방식이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 유선재판매와 도매회선임대의 경우 주요국들이 사업자간 협상보다는 소매가할인(retail-minus)방식 또는 원가가산(cost-plus)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선전화시장이 소수 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34) UNE제도는 가입자선로(LLU)뿐만 아니라 시내전화망 접속을 개방하는 것으로서, 시내전화사업자의 가입자선로외에도 서브루프, 통신망 접속설비, 교환장비, 국간전송설비, 신호망 및 호처리데이터베이스 설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망요소별로 경쟁사업자에게 적정 대가 제공을 전제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

형태이므로, 경쟁활성화를 위해 이용대가 산정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

-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및 설비제공의 대가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공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상한을 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및 설비제공 제도는 유선전화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므로 무선 도매제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공대가에 대한 사전규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고려되어야 함

가. 상호접속 산정방식

□ 상호접속 정의 및 접속료 산정원칙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방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접속료 정산의 원칙은 정산대상 상호간에 양방향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트래픽 측정이 어려운 인터넷망 간에 동일계위시에 한하여 무정산하고 있음(계위가 다를 경우는 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음)
- 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완결을 위하여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도매요금으로,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요소이고 접속을 이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요소로 작용
- 이론적으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비경쟁적일 경우 도매요금이 원가+알파(α)로 설정되어 이미 원가에 투자보수율이라는 마진이 포함된 상황이므로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
 - 이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별정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내 접속료 산정방식은 수입배분(revenue sharing) 방식에서 완

전배부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ing)을 거쳐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ing)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통신사업의 경쟁이 본격화된 1992년부터 원가기반(cost-based)의 접속료 제도 기조는 유지되어 온 상황

<표 3-9> 접속료 산정방식의 변화

구분	국내 적용시기	비고
수입배분(revenue sharing) 방식	'98~'99	이동사업자간 무정산
완전배부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ing)	'00~'03	'00~'01: 대표요금제 '01~'02: 개별요금제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ing)	'04~'09	개별요금제
소매요금 할인 방식(Retail-minus)	-	-

- 접속요율은 접속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누어 계산
 - 접속원가는 접속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비용과 원가동인이 되는 일부 비용
 - 구성비용 요소: 자본비용(감가상각비+투자보수)과 운영비용으로 구성
- 현재 사업자별 접속요율은 Top-down 모형의 검증원가를 기준으로 Bottom-up 모형에서 산출된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Top-down): 사업자 회계정보를 기초로 원가를 산정
 -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Bottom-up):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신망 재설계를 통해 원가를 산정

제22조의3(2008~2009년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금 산정) ①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사업자별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② 2008~2009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06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접속료 산정 현황

- '09년 일반전화 상호접속료는 19.3(원/분),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는 32.9(원/분)을 각각 적용하고 있음

<표 3-10> 일반전화망,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현황

(단위: 원/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전화(KT 등)		18.9849	19.4850	19.3112
이동전화	SKT	32.7757	33.4068	32.9318
	KTF	39.6049	38.7062	37.9619
	LGT	45.1317	39.0860	38.5302

- '09년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는 7.7(원/분),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는 14.9(원/분)을 각각 적용
 -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는 14.8696원/분으로 이는 일반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19.3112원/분의 23% 감면한 액수($14.8696\text{원/분} = 19.3112\text{원/분} \times (1-0.23)$)

<표 3-11> 인터넷전화 접속료 산정 현황

(단위: 원/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	5.5	7.6650	7.6674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	18.9849	15.0035	14.8696

- 후발사업자 지원 등
 -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해, 가입자증계설비 접속료를 추가로 면제 ('08년: 1.2752원/분, '09년: 1,2746원/분)
 - 시외전화 호에 대해, 시내교환설비 접속료의 일정비율(15%) 감면
 - 시내교환설비 접속료: '08년(4.6102원/분), '09년(4.6079원/분)

나. 설비제공 대가 산정방식

☐ 설비제공 개요

-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통신설비설치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 사용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설비의 제공 및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사업법 제33조의 5)

<표 3-12> 설비제공제도 내용 및 대가산정 기준

구분	제공사업자	대상사업자	대상설비	대가산정
일반설비제공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통신설비설치자	기간통신사업자(* 사업법제33조의5 제1항)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표준원가계산방식 원칙(사업자간 협의)
			전용회선(사업자간 협의)	시내: 약관요금 100% 시외/국제: 약관의 50% *부칙 제3조제2항
의무설비제공	필수적인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사업법제33조의5제1항)	기간통신사업자(* 사업법제33조의5 제1항)	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동/광 케이블(가입자구간)	표준원가계산방식 원칙
			전용회선(사업자간 협의)	시내: 약관요금 100% 시외/국제: 약관의 50% *부칙 제3조제2항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때에,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일반설비제공제도와 의무설비제공제도로 분리하여 규정 및 운용
 - 의무제공사업자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혹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즉, 의

무제공사업자의 설비는 제공하도록 규정(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제2008-123호)

- 제공대상설비의 범위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에 비해 넓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설비제공제도를 활용할 경우 허가받은 사업범위내, 망구축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

□ 의무설비제공 제도

- 사업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설비제공제도와는 달리,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사업자(현 KT)에 대해 제공의무 부과(필수설비 보유사업자)
 - 의무설비제공제도(의무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 활용시 이동통신망의 직접적인 구축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하되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운송회선과 각 구간의 여유율을 제외한 설비를 의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 별도 정의
 - 예외 규정 :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 구축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설비 및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
 - ※ 당시 KT의 광가입자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고 향후 광케이블 구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하에 광케이블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선 가입자망만 개방
- 의무설비제공제도는 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 범주내에 포함되어 규정
-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와는 달리 의무제공대상사업자 및 의무제공대상 설비를 별도로 규정
 - '01년 의무설비제공제도 규정 도입 및 '03년 대상설비, 제공사업자, 제 공절차 및 대가 등 구체화 추진

□ 대가산정 방식

- 전용회선의 경우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그 외 대상설비에 대해서는 원가를 기초로 대가를 산정
- '03년 대가산정 이후 07년 12월 이용대가 재산정(고시 제32조 3항)
 -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2년 마다 재산정 가능

<표 3-13> 제공설비별 이용대가 현황

(단위: 원/월)

구분		대가('03년)	재산정 대가('07년)	인하율(%)
외관	인입구간	701,723	424,711	40
	비인입구간	471,830	213,662	55
내관	인입구간	233,406	144,244	38
	비인입구간	168,994	74,304	56
통신주		590	502	15
동케이블		5,711	4,710	18
광케이블	인입구간	145,053	102,560	29
	비인입구간	70,592	49,93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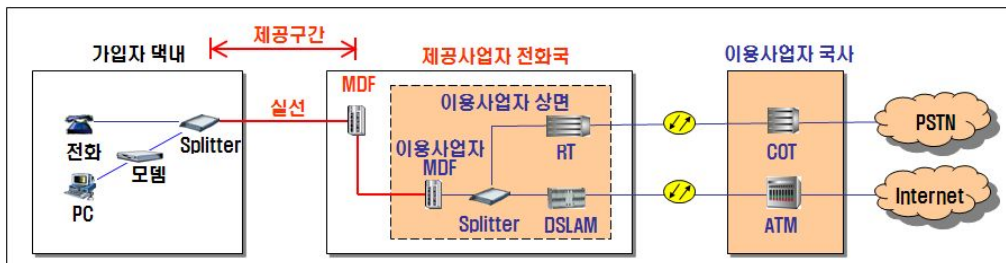
다.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대가 산정방식

- 통신사업자간 병목설비인 가입자선로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동으로 활용토록 보장하는 제도(사업법 제33조의 6)

□ 가입자선로공동활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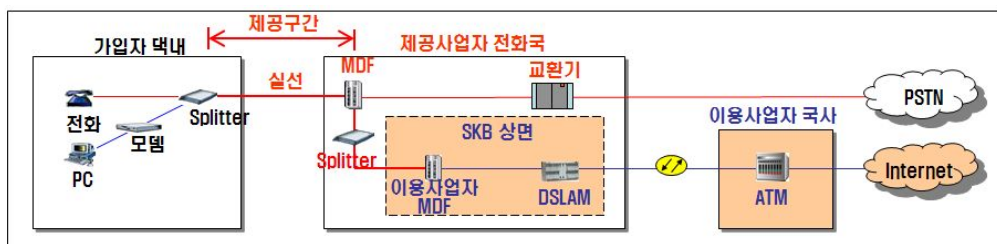
-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선로에 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제도화
 - 가입자선로 구간은 경제학적인 병목설비(economic bottleneck)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사업자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방식은 1) 동선 일괄제공, 2) 동선 중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3)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으로 구분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방식별 접속점은 용도 및 망구성에 따라 차이 있으며 접속점을 기준으로 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가, 그 외는 이용사업자가 설비 구축을 원칙으로 함
- 제공방식별 용도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가산정 방식 역시 동선일괄제공,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에는 표준원가계산방식이,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에는 수익배분 방식 사용
- 동선일괄제공
 - 동선전체를 제공사업자가 특정지점부터 이용사업자에게 일괄제공



[그림 3-8] 동선일괄제공

-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
 - 주파수대역 중 인터넷에 사용되는 고주파수대역(28.8Khz~1.1Mhz) 분리 제공 (저주파수 대역: ~3.4K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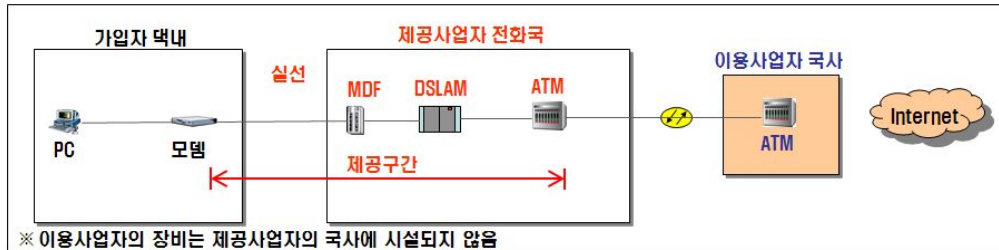


* MDF : Main Distributing Frame(주배선반) * DSLAM :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DSL 전송장치)
 ※ PSTN 신호(~3.4Khz)는 제공사업자 교환기로 초고속 신호는 전화국내 Splitter에서 분리되어 이용사업자의 DSLAM으로 입력

[그림 3-9]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

-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제공

- 초고속인터넷접속망(DSLAM 또는 ATM후단)을 모두 ISP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그림 3-10]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제공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구분하는 세가지의 방식에 대해 각기 상이한 범위 및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표 3-14>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내용 및 대가산정 기준

구분	동선일괄제공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
제공사업자	동선 가입자선로 보유 시내전화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데이콤)	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제경 전기통신사업자	접속망 유형별 가입자수 50만명 이상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와위콤)
이용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데이콤)	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제경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공동활용 대상	예비동선 제외 동선	시내전화에 사용하고 있는 동선 중 고주파 수회선	xDSL과 HFC
제공구간	시내교환 MDF-가입자측 분계선	전화국내 스플리터-가입자측 분계선	- xDSL: DSLAM/ATM 후단 - HFC: 라우터 후단
용도제한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xDSL 또는 HFC)
대가산정	표준원가계산방식	동선일괄제공대가의 50%	수익배분(9:1)

□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대가산정

- 동선일괄제공과 고주파회선분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며, 초고속인터넷망개방의 경우는 수익배분 방식으로 상호

정산

- '03년 대가산정 이후 07년 12월 이용대가 재산정(고시 제32조 3항)

<표 3-15> 활용 가입자선로별 이용대가 현황

(단위: 원/월)

구분	대가('03년)	재산정 대가('07년)	인하율(%)
동선일괄	9,070	6,570	28
고주파회선분리	4,535	3,285	28

□ 주요국 LLU 사례

○ 호주

- 호주의 경우, ULLS(unconditioned local loop service)와 LSS(line sharing service)가 각각 1999년과 2002년 규제서비스로 선언하고, 지배 적사업자인 Telstra에 가입자선로를 제공할 의무 부여
- ULLS와 LSS에서의 대가산정 방식은 TSLRIC(total service long-run incremental cost)를 적용
- ULLS(unconditioned local loop service)에 있어서는 2006년 8월 월 임 대료를 \$12.40로 정했으며 이를 2008년 1월에 \$10.00로 재조정하였으 나 현재는 2008~2009년 기간에 대해 11% 인상한 \$11.20을 적용하고 있 음
- LSS는 2006년 12월 매월 \$2.24로 임차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고, 2007 년 이를 \$1.75로 낮춘 상황
- 그러나, 도매브로드밴드서비스(wholesale broadband services)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과 같은 의미로서 이는 규제서비스가 아닌 상황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경우, RTR(Regulatory Authorit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은 1999년 7월부터 가입자선로에 접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2004년 Telekom Austria를 SMP로 지정하고 다른 경

쟁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선로에 접속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

- 대가산정 방식은 FL-LRAIC(forward-looking long-run average incremental costs)를 적용하여, 현재 월 회선임대료는 €9.33이고 분리 회선(shared line)에 대한 대가는 전체회선의 절반인 월 €4.67를 적용하고 있음

○ 영국

<표 3-16> Ofcom의 LLU 및 WRL 가격상한 및 지수 설정

서비스	요금상한	Proposed charge (’09.10. 이후)	Proposed control (’10.11. 이후)
MPF (Metallic Path Facility) rental	£81.69	£85.00 to £91.00	RPI(Retail Price Index) +0.0% - RPI(Retail Price Index) +5.0%
SMPF (Shared MPF) rental	£15.60	£15.60 to £16.20	RPI(Retail Price Index) -2.5% - RPI(Retail Price Index) +1.5%
WLR 가정용 회선	£100.68	£100.68 to £104.40	-
WLR 사업용 회선	£110.00	£106.00 to £110.00	-

* 출처: Ofcom, Ovum

- 영국에서 LLU가 2001년 7월에 도입된 이래 LLU 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거쳐 왔는데, 2005년 1월 OTA는 영국에서 도매브로드밴드를 홍보하기 위해 70%까지 LLU 이용대가를 줄였고 BT도 2005년 11월에 LLU 이용대가를 40% 더 줄일 것을 결정
- LLU 회선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2006년 1월에 비해 2007년 1월은 420% 증가한 1.3백만 회선에 달했고 2009년 3월 5.75백만 LLU 회선(2008년 1월에 비해 1.8백만 회선이 증가한 수치)으로 증가

라. 도매회선임대 대가 산정방식

□ 도매회선임대의 정의

- 도매회선임대(WLR: Wholesale Line Rental)란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BT

로부터 접속회선을 도매수준으로 임차하여 기본료와 통화료를 포함한 단일요금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정의(Ofcom, 2005)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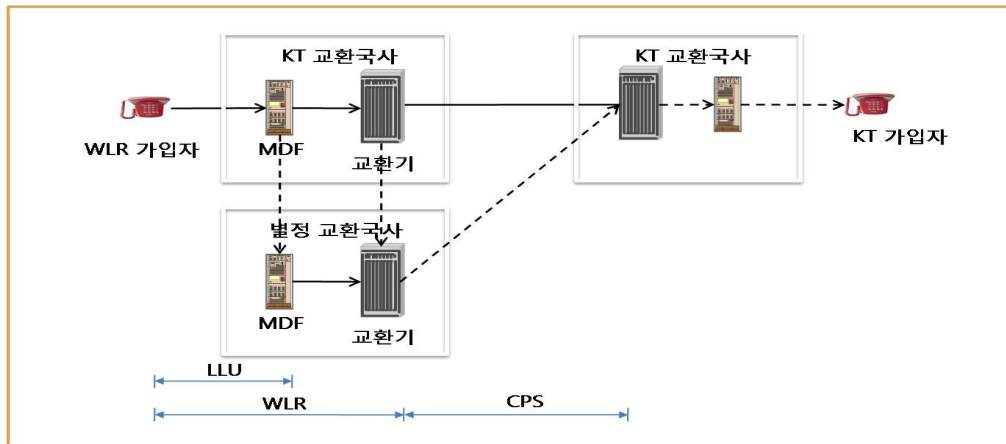
Wholesale Line Rental (WLR) allows alternative suppliers to rent access lines on wholesale terms from BT, and resell the lines to customers, providing a single bill that covers both line rental and telephone calls provided using carrier pre-selection for example.

- WLR이란 CS(Carrier Selection)또는 CPS를 통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속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부터 도매수준으로 접속회선을 도매상품으로 임차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European Regulators Group, 2005)
- WLR이란 기존의 유선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접속회선을 임차하는 서비스이며, 경쟁사업자들에게 CPS를 통하여 음성서비스 뿐만 아니라 접속회선을 재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Ovum, 2005)
-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도매회선임대란 사업자사전선택사업자(CPSO: Carrier Pre-Selection Operator) 및 서비스제공사업자(SP: Service Provider) 등의 경쟁사업자들이 시내지배적사업자(DLO: Dominant Local Operator)의 접속회선(access line)을 도매가격(wholesale cost)로 임대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재판매(resale)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도매회선임대 접속체계

-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도매회선임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접속체계 형태를 갖을 것으로 예상됨

35) Ofcom(2005), Wholesale Line Rental: Reviewing and setting charge ceilings for WLR services.



[그림 3-11] 도매회선임대

- 위 그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 발신호가 도매회선임대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착신하는 경로를 및 정산체계를 나타냄
 - 도매회선임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시내전화 발신호는 KT 전화국만을 거쳐 발신호가 착신하게 됨
 - 도매회선임대 제도가 도입된 경우, 시내전화 발신호는 경쟁사업자의 전화국을 거쳐 발신호가 착신하게 됨
- 유선시장에서 도매회선임대와 사업자사전선택제 (CPS: Carrier Pre-selection)의 도매거래는 규제기관이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내전화 시장에 도입한 경우 사업자사전선택제 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도매가격으로 구매
 - 그러나, 사업자사전선택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 경쟁사업자는 시내전화사업자로부터 사업자사전선택제를 cost-plus, 도매회선임대를 cost-plus 또는 retail-minus로 각각 구매
 - 재판매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는 “access+call”을 retail-minus로 구매

□ 주요국 도매회선임대 사례

- 덴마크
 - 덴마크는 1999년 12월, 유럽에서 처음으로 WLR을 의무화 했다. 2000년

TeleDenmark는 “resale of landline services”에 기준을 발표

- 2001년 9월 29일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Ordinance)의 표준상호 접속(standard interconnection products) 의무에 따라 TeleDenmark는 경쟁사업자에게 “landline service”를 재판매하기 위한 표준제안서(standard offer)를 작성하였고, 월간 WLR 가격은 소매가할인(retail-minus)에 기초해 계산했으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할인폭은 21%로 하였음

○ 독일

- 독일은 대체운영사업자인 Debitel이 Deutsche Telecom과 WLR 재판매에 대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Debitel은 독일 통신규제기관인 RegTP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RegTP는 SMP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비차별 원칙에 의거해 2001년 3월 Deutsche Telecom에게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도록 명령(그러나 규제당국의 재판매 결정 명령은 법원에 의해 유예됨)
- 2003년 5월 규제기관 RegTP는 Deutsche Telecom에게 access와 call 서비스에 대하여 분리된 조건으로 재판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법원은 2004년 이 결정을 지지함)
- 독일의 2004년 6월 통신법은 최소한 WLR 공급비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매가할인(retail-minus)에 근거하여 WLR을 제공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2001년 10월, 통신규제당국인 NPT(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는 Telenor가 호(calls) 서비스와는 별도로 CPS 고객을 가지고 있는 대체사업자에게 retail-minus 18%(차후 16%로 변경)에 근거해 가입재판매(resale of subscription)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NPT는 Telenor의 네트워크 인프라회사가 Telenor의 소매판매회사와 세분화접속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대체사업자가 노르웨이 법(national law)의 비차별적 의무에 기초해

Telenor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

- 도매 할인 폭은 소매가할인(retail-minus)을 기반으로 18%로 결정

○ 아일랜드

- 아일랜드 규제당국 ODTR(현재 ComReg)은 2002년 7월, “CPS in Ireland 2002”에 대한 자문서를 발표(이 자문서에 핵심 현안은 CPS 사업자가 Eircom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CPS 서비스를 포괄해 고객에게 단일청구서(one-billing)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임)
- 자문서 검토 결과, ComReg는 Eircom에게 2002년 9월까지 WLR 및 one-billing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6월 규제당국은 WLR 요금을 소매가 할인율(retail-minus) 8.5%로 결정
- 2004년 2월 20일, ComReg는 Eircom이 2004년 4월 1일까지 “single billing-WLR” 상품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고, 2005년 9월부터 소매요금 할인율(retail-minus)을 10%로 인상하기로 결정
- ComReg는 WLR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Eircom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다 유연한 소매요율을 제공하고 다양한 통화방식(calling plans)으로 “bundled call minutes”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

○ 영국

- 2006년 1월 BT의 구조분리 후 WLR은 Openreach 포트폴리오 하에 편입되게 되었고, 2009년 3월 기준 영국내 5.64 백만 WLR 회선이 존재하는데 이는 2008년 3월 기준 보다 1.02 백만회선이 증가한 상황(반면, CPS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수는 동 기간에 5.89 백만 회선에서 4.03 백만 회선으로 감소)
- 2009년에 실시한 유선도매시장 심사에서 Ofcom은 BT가 가정용 아날로그회선 도매서비스 시장에서 더 이상 SMP가 아닌 것으로 지정하고 WLR 제공의무 면제대상으로 지정
- WLR 이용대가 산정방식은 원가가산(cost-plus) 방식을 적용

○ 오스트리아

- 2002년 5월 TA(Telekom Austria)는 WLR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4

- 년 11월 22일 TKK(Telekom-Control-Kommission)는 TA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TA가 제출한 WLR에 대한 재판매를 허용
- WLR의 요금은 평균소매요금(average retail tariff)에서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를 제외하는 소매가할인 기준(retail minus basis)으로 산정

The price for WLR is calculated on a retail minus basis by deducting avoidable costs from an average retail tariff calculated on the basis of all available tariffs. The most recent offer is for a monthly fee of €12.70 per line for the line rental and one-off investment payment of €750,000 plus €11.32 per line.

* 출처: Austria (country regulation overview), 2008.9.29.

- 회선임대에 대한 회선당 월 12.70유로와 최초 1회에 회선당 750,000유로와 11.32유로를 합한 금액을 이용대가로 지불
- 스웨덴
 - 스웨덴 통신규제기관인 PTS는 2004년 2월, 거주용 및 비거주용 고객(market 1 and 2 of the Commission's respective recommendation)의 PSTN 접속시장에서 TeliaSonera를 SMP 사업자로 판단한 후, 이 회사에 대해서 WLR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
 - TeliaSonera는 2004년 5월 3일 WLR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소매가할인율(retail-minus) 12%인 WLR 상품을 도입
- 포르투갈
 - 포르투갈 통신규제기관인 ANACOM은 2005년 2월 24일 PT를 SMP 사업자로 규정하고, 도매회선재판매 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
 - 2005년 8월 8일 ANACOM은 30일간 공청회를 가진 후 PT의 가입자회선재판매 상품(SLRO, Subscriber line resale offer)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제안
 - PT가 신규사업자에게 청구한 SLRO의 월 요금은 11.32로 결정³⁶⁾
 - 그러나, PT의 SLRO 월 요금제안을 ANACOM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러한 요금이 PT가 자사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월 가입자 요금(12.6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PT의 가입자회선 재

36) SLRO 월 요금 11.32는 PT 보다 17% 할인된 금액이다.

- 판매 서비스(subscriber line resale)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새로운 사업자들의 마진을 너무 적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 또한 ANACOM은 PT가 단일가격(a single price)으로 “traffic and the network line”를 묶음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을 규정

○ 프랑스

- 프랑스 통신규제기관(ART, 현 ARCEP)은 2004년 7월 9일 유선통화발신(call origination)과 전송(transit)의 도매시장과 관련된 자문서(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
- 이 자문서에서 ART은 FT를 두 시장에서의 SMP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RT는 FT가 새로운 도매접속서비스인 가입재판매(subscription resale)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FT(France Telecom)는 2005년 9월 가입재판매 도매서비스 제안서(the proposes whosale offers for resale of subscriptions)를 ART에 제출한 후, 최종 소비자가 광대역 서비스를 전화가입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도매 ADSL 광대역제품(a wholesale ADSL broadband offer)은 2005년에 제공
- 2005년 7월 27일 유럽위원회(EC)는 FT로 하여금 1년간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도매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자는 ARCEP의 제안을 승인
- FT는 2006년 4월부터 유선시장에서 WLR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당시 매월 10.9유로의 임대 대가를 책정하였고, 2007년 7월부터 11.7유로로 인상

○ 호주

- 호주의 통신규제기관인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2006년 7월에 2006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규제서비스(regulated service)로서 WLR 제공을 선언
- 이때 WLR 가격 방식을 소매가할인방식(retail-minus pricing)을 기초로 하였고, TSLRIC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로서 현재는 소매

가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표 3-17> WLR 요금약관('08.1.1~'09.7.31)

	HomeLine Part	BusunessLine Part
Telstra retail Prices	\$30.41 ex GST	\$31.77 ex GST
Unit Avoidable Retail Costs	\$4.84/mth	\$4.84/mth
Indicative Price	\$25.57	\$26.93

* 출처: ACCC, 2008³⁷⁾

5. 기간-별정 차등규제 합리화 방안

- 기간·별정간 도매대가 산정 대안은 원가기반 대가 산정(안), 소매가기반 대가 산정(안), 원가 및 소매가 절충(안)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원가기반 대가 산정(안)은 상호접속고시의 접속료 산정 방안을 활용하며, 소매가기반 대가 산정(안)은 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소매가와 회피가능비용 추정을 통해 이루어짐

□ 원가기반 대가 산정(안)

- 원가기반 대가산정(안) 근거 및 장단점
 - 원가기반 대가 산정의 근거는 상호접속고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원가 기반의 도·소매요금 산정은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매 이용사업 활성화라는 규제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소매 요금이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소매요금을 낮추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모든 국내 도매(음성서비스) 관련 대가 산정은 표준원가, 장기증분원가 등의 원가 모형에 기반하고 있음

37) ACCC, Local carriage service and wholesale line rental - final pricing principles and indicative prices for 2008 - 2009, August 2008 .

- 원가기반 대가 산정은 상호접속고시를 통한 유무선 음성 서비스에 대한 원가 정보 활용을 통해 규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원가기반 대가 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으로는 도매 제공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동일하고 다만 이용되는 구체적인 설비들간의 차이가 상호접속과 도매제공서비스 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접속고시에 의한 원가를 도매 대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도 의문시 됨
- 또한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에 대한 모든 원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의 분담에 도매제공이용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음

○ 원가기반 대가산정(안) 방법

- 별정유형별 도매통화요율은 별정통신사업자가 접속하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 방식
- 즉,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하게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들을 기반으로 그것의 접속요율을 대간 산정으로 활용하는 산정구조
- 예를 들어, 소프트스위치(SS)의 접속요율을 a, 게이트웨이 b라고 하면 설비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설비의 접속요율을 개별 적용하여 합산함으로써 통화요율을 산정하고,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이(a+b)를 포함한 접속요율까지 합산하여 통화요율을 합산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 소매가 할인 대가산정(안)

○ 소매가 할인 대가산정(안) 근거 및 장·단점

- 소매가기반 대가 산정은 산정절차가 원가기반에 비해 간단하여 산정 비용 및 규제 비용이 작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마케팅 및 판매망 등 비 네트워크 요소 비용에 효율성을 갖는 도

메이용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진입이 용이하고, 유지가능성이 크므로, 별정통신제도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도매제공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원가기반 대가 산정에 비해 망 투자 유인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활성화 미흡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잠재적 이용사업자의 감소 위험이 있으며, 할인율을 결정하는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³⁸⁾의 범위 및 제외 대상 선정 등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회피가능비용의 범위에 따라 도매서비스 이용대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사업자별 회피가능비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이용사업자 유형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며, 회피가능비용의 설비별 배분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소매가 할인 대가산정(안) 방법

- 도매통화료는 도매통화요율을 도매통화량으로 곱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도매통화량은 도매제공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도메이용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위해서 제공한 통화량을 의미
- 서비스별 도매통화요율은 서비스별 소매수익에서 서비스별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한 후 서비스별 총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서비스별 소매수익은 서비스별 기본료수익(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별 매출액 비율로 배부된 서비스별 총기본료수익)과 서비스별 통화료수익(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별 총통화료수익)의 합으로 계산
- 서비스별 회피가능비용은 회피가능비용 대상별로 회피가능배부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 때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이란 소매고객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모든 비용으로 마케팅, 영업, 과금, 회계 및 고객 지원 비용을 포함
- 국내 사업자별 영업보고서 회계 계정 중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통화량 기준의

38) 소매고객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모든 비용으로 마케팅, 영업, 과금, 회계 및 고객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배부율을 고려해서 산정

미국 FCC의 소매가할인 산정방식

FCC(1996)³⁹⁾는 기존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소매활동을 하지 않는데 따른 회피비용(보다 엄밀하게는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s))를 제외하여 소매가할인(retail-minus) 요금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c_1 = RP(1 - r(\delta))$$

여기서, 소매요금(즉, RP)은 시내전화 소매요금(정액제), r 은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영업비용에서 소매비용(retail cost: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미국의 FCC(1996)는 FCC 96-325에서 '회피비용이란 LEC(local exchange carrier)가 도매가 아닌 소매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피가능비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회피가능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비용은 ㉠상품관리(product management) ㉡판매(sales) ㉢상품광고(product advertising) ㉣호완료서비스(call completion services) ㉤번호서비스(number services)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가 포함되며⁴⁰⁾ 전액 회피가능비용으로 분류되고 간접비용은 ㉠일반지원비용(general support expenses) ㉡기업운영비용(corporate operations expenses) ㉢미수취통신비용(telecommunications uncollectibles)이 포함되는데, 일부만 회피가능비용에 반영하여 제외된다. 그리고 δ 는 도매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만큼을 감안하여 회피가능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FCC(1996)는 직접 회피가능비용의 10% 정도로 추산한바 있다.

만약 회피가능비용을 추정하여 도매요금(wholesale rates)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주위원회는 ILEC의 소매요금에 17%~25%의 할인을 적용하여 잠정적 도매요금으로 설정하고 적정한 기간 내에 회피가능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매요금을 다시 산정도록 규정하였다.⁴¹⁾

이러한 FCC의 retail-minus 책정방안은 망보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9) FCC(1996), First Report and Order in the Matter of Interconnection and Resale Obligations Pertaining to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CC Docket No. 94-54), FCC 96-263.

40) FCC는 직접비 중에서 마케팅비용(미국 회계번호: 6611-6613에 해당)과 customer service(미국 회계번호: 6623)의 10% 만큼은 회피불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CFR의 51.609의 (d)항에 명문화 되어 있다.

41) WIK(2004)는 (회피가능비용)이란 ㉠상품개발(product development) ㉡상품관리(product management) ㉢마케팅(marketing) ㉣영업(sales) ㉤광고(advertising) ㉥직·간접 가격촉진(direct and indirect price promotions) ㉦부실채권(bad debt) ㉧고객관리 및 서비스(customer care and service) ㉨청구(billing) ㉩결제(payment) ㉪운영자본(working capital) ㉫자산이 개입될 경우 그 자본비용(as far as assets are concerned costs include capital costs) ㉬원인있는 일반비용 및 간접비용(attributable common and overhead costs)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대가산정 시물레이션

- 원가기반으로 도매대가를 적용했을 경우 현재 상호접속에 따른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
- 소매가할인의 경우, 국내 대표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월평균 인터넷전화평균사용량을 300(분/월)이라 가정하고 소매요율을 구하게 되면 19.33(원/분)이고 영업비용에서 회피가능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국한했을 경우 19.1(원/분)이라는 이용대가를 구할 수 있음
 - 더욱이 광고선전비 이외의 다른 회피가능비용을 더 고려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이용대가는 더 할인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됨
- 이는 현재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제공하는 접속료 보다는 작은 것으로 소매가할인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이용대가가 낮아지게 됨

□ 합리화 방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원가기반 보다 소매가 할인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더 많은 이용대가를 지불할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원가기반 즉 현재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매제공에 있어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대가 산정을 하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특정 방안을 선호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은 존재
 - 따라서 두 방안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최대한 반영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원가(상호접속료)에서 얼마정도의 플러스(+) 알파

(α)를 고려하는 정산방법에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간-기간과 동일한 이용대가를 산정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

- 이는 실질적으로 상호접속료로 정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호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 원가에 기초한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의 산정방식인 상호접속기준과 같이 기간-별정간 원가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기간과 별정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간 입장과 대가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선 현재의 원가가산 방식에 어느 정도 마진을 설정하는 산정방식을 취한 후 점진적으로 도매제공 형태별로 적합한 대가산정 방식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해외사례에 따르면 교환설비까지 포함하는 도매제공 방식의 대가산정은 소매가할인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이를 제외한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원가가산방식을 대부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별정 1호와 2호간에 대가산정방식을 차이를 두어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제 3 절 선불통화권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

1. 민간운영기구 설립의 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에 따르면 별정통신자의 선불통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계획	○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역무제공 불가능시 대책 명시 -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잔액확인 등 이용방법,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 시 연락처, 그 밖의 제한사항 및 이의 고지방법 등 ○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선불통화권⁴²⁾ 발행총액을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할 것(다만,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 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일 것) - 발행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추가 발행예정일 30일 이전에 제출 - 보증보험증서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선불통화권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이를 갱신하여 제출 ○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할 것
-------------	--

-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가 이러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42) 선불통화권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역무제공 이전에 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가 일정기간 선불통화권을 사용하여 실제 소진된 경우 발행총액 범위 내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선불통화권 관련 사고건수는 별도의 전문 관리기관 설치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러한 사후적인 관리체계 하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발행액수에 대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
 - 향후 선불통화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현행 별정통신 선불사업자에서 기간통신 선불사업자로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
 - 선불통화권 사업자들의 발행액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활용한다면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기능이 가능하여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3항

□ 피보험자 관련 사항

- 동 법은 피보험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피보험자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통령이 피보험자를 지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따라서, 피보험자는 동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5항

□ 인증센터 운영 근거규정 마련

- 선불통화권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 우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법률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보증보험에의 가입·갱신 및 지급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현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또 다른 대안(입법 조사관의 의견 또
는 의원입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수정 가결 과정을 통해
반영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증보험 가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증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 인증센터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에게 위탁
할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인증 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
 - 또한 통상적으로 ‘인증’이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 등의 품질이
나 성능 등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적용
 - 따라서 선불통화권의 과·오발행을 막기 위한 절차인 경우, ‘인증’이 아
닌 수량 또는 발행총액의 ‘확인’ 절차의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민간기구)가 선불통화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발행총액
등의 관리를 위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선불통화권
발행과 관련한 인증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인증센터의 설치·운영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 선불통화권 발행심의(심사)위원회 관련 국내사례

가. 검토 범위

- 시행령 등의 단계에서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사업자들이 선불카드를 발행함에 있어 법률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갱신 및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나. 통상적인 법령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현황

-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유형이 대부분임

<표 3-18>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사례 검토

법령명	소관위원회	근거규정	구체적인 구성 및 운용 규정
전기사업법	전기위원회	- 법 제53조 내지 제60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 - 제60조에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	- 영 제39조 내지 41조에서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수당 및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 - 영 제41조에서는 동영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할수 있도록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위원회	- 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 영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심사기준 및 대상자의 범위 규정 - 영 제15조에서 심사절차를, 제1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17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인터넷주소자원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법 제6조에서 방통위 내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 제13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운영, 회의소집절차,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및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

다. 민간에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한 법률 사례

- 법률에서 특정 민간단체의 설립 및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업무에 대한 심의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유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단체에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위탁

제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단체설립) ①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국고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삭제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 (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9. 생략

라.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나, 시행령에서 특정 사안의 「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단계에서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상의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음

- 상기 법률에서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4조)
- 시행령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특정하고, 그 대상에 속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행규칙에서는 지원서식, 신청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심사’라 함은 정해진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 내지는 당해 심사 신청자의 사항에 관하여 점수화 하는 특정된 범위에 한정된 업무 중심

<표 3-19> 게임산업진흥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해당 조항	내용
법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 ~ 제4조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 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선정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마. 인증업무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 철도사업법 제29조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
- 철도사업법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행함에 있어서 철도사업자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선불통화권 운영기구 관련 해외사례

가. 일본

1) 보험제도 운영

- 선불제도와 관련하여 선불증표의 발행 시 「선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탁제도를 이용(원칙)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국채, 지방채 및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 보증금에 충당할 수 있음
- 선불통화카드와 같은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불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선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율
 - 동 법령은 1989년 말 종래의 상품권단속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로 “선불식 증표의 발행자”에 대한 등록 및 기타의 규제를 행하고 있음
 - 100만엔 미만인 경우 과징금 면제
 - 주무관청은 재무성(재무대신 또는 내각총리대신)

2)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 상기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발행보증금에 대한 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자가형 발행자 등은 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발행한 선불식 증표의 미사용 잔고 중 신고 기준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액을 넘는 경우, 기준일 미사용 잔고의 2분의 1 이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발행 보증금을 해당 기준일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 근처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다만, 발행보증금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공탁된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있는 동안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공탁되어져야 할 금액의 발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아도 됨(동법 동조 제2항)
 - 또한 발행보증금은 국채, 지방채 및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음(동법 동조 제7항)

3) 이용자불만 처리

- 선불식증표발행협회를 통해 선불식 증표 구입자 등의 이익보호와 선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불식증표발행협회는 공익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음
 - 구입자 등으로부터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담, 불만 사항 관련 조사 및 해당 내용을 해당 발행자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
 - 필요한 경우 해당 발행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행자는 협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음(위반 시 30만엔 이하의 벌금)

나. 호주

1) 보험제도 운영

- 선불통화카드 등 재판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 Part 7에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체계(관련 정부기구 포함)를 구성할 것을 명시
 - 다른 표준전송서비스 제공(alternative supply of standard carriage services), 제3자 보증(third party guarantee), 보험(insurance cover), 신용계좌에서 지불정지(holding of payments in trust accounts)
- 모든 사업자가 법령에 한정하는 체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제기관인 ACMA가 사업수행기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면제해 주고 이(사업체 이름)를 공표
-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ACMA가 연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강제하는 체계로 운영
- 호주는 이용자보호 법령에 여러 가지 이용자보호 근거를 마련 규제기관(ACMA)이 체계와 조직을 구성

2) 이용자불만 처리

- 선불통화카드에 불만(카드발행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아 쓸모없는 카드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객서비스센터”와 같은 해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불만처리부서와 해결
- 해결이 않된 불만에 대해서는 TIO(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에 무료로 의결을 의뢰하여 TIO 처리절차를 거침
- 호주는 면제사업자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별도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다. 캐나다

1) 보험제도 운영

- (보증)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조항을 법령에 마련한 상황은 아니나, 공제조합 유형의 기구를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배상 업무 처리
- 캐나다의 경우는 규제기관인 CRTC가 직접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관여하지 않고, CCTS(Commissioner for Complaint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c.)라는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를 설치 운영
 - CCTS는 TSP(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가 기금을 제공하지만 TSP와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고, 회원은 CCTS 정책에 동의하여 가입하는 사업자로 한정
- 캐나다에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한 이유는 장거리전화시장(선불카드 포함)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취해진 조치임

2) 이용자불만 처리: CCTS

□ 설립근거

- '07년 4월 4일, "Order in Council"에 의해 통신산업에 개인고객과 소규모 소매상이 제기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임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 회원사

- '09년 현재 총 40개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라. 스위스

1) 선불통화권 사업자 규제 현황

- 스위스 규제기관인 OFCOM은 선불통화카드 사업자를 규제하는 기관이지만, 현재 스위스 통신법상에 선불통화카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OFCOM은 선불통화카드 사업자가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선불통화카드의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한 반환요구가 가능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Art. 12c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하여 “ombudscom”이라는 분쟁조정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 상황
 - 통신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사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둘 중 어느 누구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는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다만 쌍방 모두 이러한 분쟁 조정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불통화권 사업자가 이러한 중재 기관의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Art. 12c1 Dispute resolution

1 The Office shall establish a dispute resolution service or shall entrust this to third parties. In the event of disputes between customers and provider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value-added services, either party may invoke the service.

2 The party invoking the dispute resolution service shall pay a handling fee. The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value-added services shall bear the costs of the procedure minus the handling fee.

3 The parties are not bound by the dispute resolution decision.

4 The Federal Council regulates the details.

* 출처: Art. 12c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2) 이용자불만 처리: ombudscom

- ombudscom은 연방 통신청(OFCOM)의 위임을 받은 통신 조정 기관으로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스스로 만족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스위스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예를 들어 090x 번호를 통해서 비용

- 을 지급해야 하는 연결이 증가)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를 중재
- 중재의 목표는 당사자의 호의적인 합의와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
- ombudscom는 절대적인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고, 관련 당사자의 어떤 이해도 대변하지는 않음
- 조정 기관은 조정 절차에 있어서 재단 관리 위원회나 당사자, 외부 인물, 조직 또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 사항도 수용하지 않음
-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음
- 전체 비용은 현재 사업자가 부담함. 즉, 이용자는 무료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의 부담 비용은 사안별로 상이하지만 건당 1,700 CHF를 부담하고 있음 (단, 이는 후불사업자의 경우에 한하고 선불사업자는 1,420 CHF를 미리 지불)
- 평균적으로 ombudscom의 조정 건수는 매년 800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제6장: 조정 기관

제42조 시설

- 1 BAKOM(스위스연방통신국)은 조정 기관을 설치하거나 제삼자(대리인)에게 본 규정 발효 후 15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기관을 설치할 것을 위임한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인에게 조정 업무를 양도할 수 있다:
 - a. 대리인이 이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
 - b. 대리인이 조정 활동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c. 대리인이 대리인의 과제를 독립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확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재를 위임 받은 인물이 필요한 직업적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장하는 경우;
 - d. 대리인이 BAKOM과 공공 여론에 대하여 대리인의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소위 연간 활동 보고서 발표를 약속하는 경우.
- 3 BAKOM은 한시적인 기한을 위한 대리인을 임명한다. BAKOM은 공공 조달 제도에 관한 1995년 12월 11일자 규정 제 32조 이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 4 위임은 행정법에 의거한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 5 BAKOM은 조정 기관을 담당하는 자연인의 임명을 승인한다.

* 출처: Art. 42 à 50 de l'Ordonnance du 9 mars 2007 sur les services de télécommunication (OST, RS 784.101.1)

○ ombudscom의 업무

- 유선망과 이동 통신 분야에서의 통신 서비스, 인터넷, TV-연결에서의 서비스와 기타 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민사 소송 사안을 담당

※ 예 : 전화 요금 통지서, 전화 회사 교체 시의 실수, 부가 가치 서비스 (예를 들면 텔레폰섹스, TV 복권, 서포트, 정보 또는 상담 기관), 전화 및 인터넷 연결 차단, 불충분한 애프터서비스 또는 사업자의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을 처리

○ ombudscom의 절차 진행 방법

소송 절차 진행

조정 청구에 있어서의 소송 절차 진행

(사적 개인 또는 법인과 통신 서비스 사업자 및 부가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민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1. 전제 조건 충족?

전체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는 ombudscom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용자로서 이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상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다른 당국에 계류 중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서식 기재

조정 청구는 오직 완벽하게 기재된 서식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서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청구 서식. 귀하는 또한 다음 주소로 서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하게 기재된 서식은 ombudscom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를 수정하라는 요청과 함께 반송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된 청구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 있어서 조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나서 조정 절차를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는 제출된 소송 사안에 있어서 오직 ombudscom을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검토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 및 부가 가치 서비스 사업자 청문

완벽하게 기재된 서식이 도착한 후에 ombudscom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사업자 및 부가 가치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 조정 청구는 완벽하게 기재한 서식과 함께 접수되고, 이용자는 이 서식

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사업자와 해결책을 찾고자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신뢰성 있게 설명해야 함

- 조정 청구가 접수된 후에 ombudscom은 처음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한 다음 모든 서류를 검사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조정 제안을 제출.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안에 동의하고 양쪽 모두 협상 해결에 서명하면 조정은 성공적으로 종결됨
-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조정 절차 이전과 마찬가지로의 상태가 적용됨. 즉, 예를 들어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중단되었던 계산이나 경고 진행이 다시 계속됨

3) 선불통화권 사업자와 이용자간 잔여금액 반환과 관련된 현황

- 스위스의 경우 OFCOM은 선불통화권의 잔여 금액의 반환과 관련된 이용자 불만 접수 건수는 거의 없는 상황
- OFCOM은 스위스에서 선불통화권사업자가 거의 파산하거나 사기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화를 위해 미리 지불한 금액을 사용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판단함
- 더욱이, 일반적으로 선불통화카드 상의 잔금이 중요시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임
- 스위스에서는 선불통화권 사업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자가 파산 등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재정 자원이 더 이상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

4) 선불통화권 규제에 대한 OFCOM의 입장

- OFCOM의 견해로는 이러한 문제는 통신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함
- 예를 들어, 상품권 (gift voucher)을 상품으로 바꾸려 하는데 상점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민법 (civil law)상의 문제가 발생하

게 됨

- 이는 특정분야만 국한해 OFCOM이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이고, 통신분야의 규제기관인 OFCOM이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임

마. 아일랜드

1) 선불통화권 사업자 규제 현황

- 아일랜드의 선불통화권(일명 선불통화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통신사업자 규제기관인 ComReg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규제 범위에서도 속하지 않음
 - 이는 선불통화권이 ComReg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품(commercial product)로 분류됨을 의미
- 선불통화권 이용자는 아일랜드 내 소비자법 (consumer law), 즉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에 의해 보호됨
 - '07년 5월에 시행된 "The Consumer Protection Act 2007"은 기존 30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소비자법의 개정차원에서 만들어 짐
 - 이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독립기관인 소비자자원(National Consumer Agency)이 '07년 5월 1일 설립되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소비자원은 규제기관(ComReg 등)과 다른 State agency들과 긴밀히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

2) 소비자원의 업무 및 보(배)상체계

-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변호하고 소비자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소비자 복지와 소비자보호
 - 상거래소송과 관련된 사업자에 가이드

- 품질보증 체계 등
- 사업자의 금지된 행위나 실행에 의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비자보호법 section 81에 의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배상을 받도록 소송 제기
 -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나 손실에 관해 법원이 적절히 결정한 배상액을 지불하도록 소송 제기
 - 배상 명령은 법원이 부과한 벌금 또는 과징금 대신 또는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음. 단, 민사소송이 이미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에서 제외

3) 선불통화권 사업자의 사업철수 또는 파산 등에 관한 이용자보호 체계

- 선불통화권 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돈은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소비자는 청산인(liquidator)에게 클레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이때 파산한 기업이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단, 소비자는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s)로 취급함)
 - 채무변제의 우선순위는 은행과 같은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s)에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자금은 종업원과 세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국세청(revenue commission)과 같은 우선 채권자(preferential creditors)에 지급되고, 그리고 나서도 남은 자금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변제되게 됨
 - 따라서, 최후순위인 소비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불통화권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기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는 회수할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4.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운영 방안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범위내 방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3조 관련 시행령에서 (가칭)「선불통화권심의위원회」 및 인증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법률에서 심의위원회, 인증 및 인증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선불통화권 발행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적정성 내지 보증보험에의 가입비율만을 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동 “심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할 것인지, ○○○(민간기구)가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기타 방안

- 현 개정(안) 내에서 추진 후 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제1안)
 - 현 개정 법률(안)에 따라 시행령에서 ○○○(민간기구)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한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 위 법령 검토 사례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선불통화권 발행 시 보증보험에의 가입·갱신 및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방법 보다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때 인증을 거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 상에

가산요소로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방법임

- 이러한 자율적인 규제환경의 구축으로, 민간기구에서의 업무는 자율적인 시장 감시기능과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로 국한해야 하며, 관리감독 업무는 현재와 같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할하는 이원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 개정(안)의 수정 방안(제2안)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시 수정 가결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상정하는 해결방안(제2안)
- (가칭) 「선불통화권발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의 형태 등을 통해 국회에 상정하는 작업이 필요

○ 현행과 같은 체계 속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를 관리하는 방안(제3안)

- 가장 보수적인 방안으로 종래와 같이 전파관리소장에게 당해 업무를 수행케 하는 방안

다. 일반 또는 통신관련 소비자기구를 이용하는 방안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불통화권 이용자보호 체계와 같이 통신규제기관에서 직접 규제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하나로 취급하여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 더욱이,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통신법에 근거해 OFCOM이 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를 제 3의 기구인 ombudscom (단, 선불통화권 이용자보호 전담기구는 아님) 을 두어 OFCOM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어, 그 성격이 정부주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mbudscom의 조정절차는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강제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적용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그러나, 가입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운영시 참고할 사항임
- 단, 스위스의 경우 통신법에 소비자기구 설립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자로부터 우리나라 원화로 약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수준, 별정사업자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운영비는 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

제 4 장 결 론

제 4 장 결론

본 보고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방법 및 가입 의무/면제 대상사업자의 범위 선정과 별정통신 호별 진입규제의 통합방안, 그리고 별정-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차등규제 방안 등 별정/부가통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제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선불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개정 사업법에 적시한 재정적인 능력과 이용요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계적 지수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통신사업자를 모집단으로 하는 모수를 기초로 선불통화권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여 가입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사업자와 면제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불통화권 사업자에 적용하여 해당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별정통신사업자 호별 통합방안에 있어서 우선 별정 1호 사업자와 별정 2호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한 사업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별정 1호와 별정 2호의 진입규제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교환설비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근거의 불합성에 대해 살펴본 후 역무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별정 1호와 별정 2호의 진입규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29조5항의 삭제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위가 이용자 지위에서 사업자 지위로 대등한 지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제공받는데 있어 불합리한 요소나 이용대가 정산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향후 법 시행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한 차등규제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별

정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자신에 맞는 지위에서 상호 설비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별정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전체 통신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원리스캠, 과금조작 등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적발 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산정기준 개정 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 합리적 논리 적용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사전에 추정 가능토록 하여 사전적인 위법행위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_____,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김병운, 신현문, 조수미(2008),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방송통신위원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_____,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_____, 전기통신기본법.
_____, 전기통신사업법.
____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_____,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_____,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_____,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_____, 전파법.
이상우(2009), 상호접속개념 및 접속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_____(2009), 설비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용근, 한진수, 김동철, 김진선(2003), 회계원리.
자식경제부, 전기사업법.
행정안전부, 지적법.

(국외문헌)

- ACCC(2008), Local carriage service and wholesale line rental - final pricing principles and indicative prices for 2008-2009.
ACMA(1997), Telecommunications Act 1997.
_____(1999), 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
_____(2007),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_____(2009), Phone Cards Fact Sheets.
ComReg(2007), Prepaid Phonecards.
Communications Alliance Ltd(1997), 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s Code(C628:2007).

Department of Justice Canada(1993), Telecommunications Act (1993, c. 38).
 FCC(1996), First Report and Order in the Matter of Interconnection and Resale
 Obligations Pertaining to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CC Docket No. 94-54),
 FCC 96-263.
 FTC(2008), Prepaid Calling Card Consumer Protection Act.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2002), Voluntary Code of
 Practice for Pre-paid International Telephone Card Services
 Mox Telecom AG, General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Of Mox Telecom AG For
 Calling Card Services.
 National Consumer Agency(2007), Consumer Protection Act.
 Ofcom(2004),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omplaints, and complaints and
 disputes about breaches of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EU Directives.
 ____ (2005a), Customer Codes of Practice for handling complaints and resolving
 disputes.
 ____ (2005b), Notification of Contravention of General Condition 10 under Section 94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____ (2005c), Wholesale Line Rental: Reviewing and setting charge ceilings for WLR
 services.
 OFT(2002), Enterprise Act 2002.
 ombudscom(2008), Reglement De Procedure.
 Ovum(2005), France Telecom to offer WLR in 2006.
 ____ (2008), Austria (country regulation overview).
 ____ (2009a), Ireland (country regulation overview).
 ____ (2009b), UK (country regulation overview).
 Telecommunications Practice(2006), FCC Imposes Regulations on Enhanced Prepaid
 Calling Card Provider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1997), FTC v. Trans-Asian Comm'cns, Inc., 97-CIV-5764
 (S.D.N.Y.).
 総務省(1989), 『前拂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